

최종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Taxonomy) 가이드라인

- 개정 -

2025. 12. 31.



기후에너지환경부

CONTENTS

⋮

제1장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5
1. 배경 및 필요성	7
2. 개발과정	9
3. 개념 및 주요내용	11
4. 적합성판단 절차	14
5. 적합성판단 사후관리	16
6. 활용방안	17
7. 적용 현황 및 향후계획	19
제2장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녹색경제활동	21
제3장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판단 기준	33
제1절 녹색부문	41
제2절 전환부문	134
붙임 1~6. 공통 배제기준	141
붙임 7.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	156
붙임 8. 녹색분류체계 관련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159
붙임 9. 녹색분류체계 관련 온실가스 감축설비 대상 목록	162

제 1 장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 개발과정
3. 개념 및 주요내용
4. 적합성판단 절차
5. 적합성판단 사후관리
6. 활용방안
7. 적용 현황 및 향후계획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1.5℃로 제한하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감축 압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법제화하였다.

2025년 11월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 감축하기로 확정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중간 이정표를 한층 강화하였다. 2035 NDC는 IPCC의 1.5℃ 시나리오 권고, 헌법재판소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결정, 산업 경쟁력과 미래세대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된 것으로,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제도적 수단이 절실하다.

에너지·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도 진행 중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에 따르면, 전력소비는 2024년 557.1TWh에서 2038년 735.1TWh로 연평균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전기화(전동차·전기보일러 등), 데이터 센터, 첨단산업 등 추가 수요가 증가분의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AI·데이터센터, 반도체, 전기차 등 전력 다소비 신산업의 확대는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의 적시 확충과 함께, 관련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라는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녹색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규범·제도 정비가 진행 중이다. EU는 2020년 「EU 탄소노미 규정(Regulation (EU) 2020/852)」을 법제화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분류하는 공통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기업 공시·금융상품 설계에 연계함으로써 녹색투자를 확대하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EU내 정책·산업·기술 동향 등을 반영하여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EU 분류체계를 개정하고 있다.

ASEAN,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EU 탄소노미를 참고로 각국의 상황에 맞는 분류체계를 개발했거나 개발 중이며,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도 “ISO 14030-3: 분류체계”를 발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2021년 12월 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국내 산업과 경제 구조를 반영하여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으로서 녹색채권,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녹색여신 등 녹색금융 시장에 활용되고 있다.

변화되는 대내·외 흐름 속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2035 NDC 이행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녹색분류체계는 한정된 재정·금융자원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활동, 기후적응 및 기타 환경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으로 유도함으로써, 2035 NDC와 2050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투자 나침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보완·개정되지 않은 기후변화 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관련 경제활동에 대하여, 변화된 국내 기술·산업 현황과 정책·제도 등을 반영하고 녹색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과 아울러 국내 녹색분류 체계의 주된 사용층인 금융·산업계의 활용성과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을 하였다.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금융지원의 방향이 일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좋은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경제활동과 그 기준은 국제 동향, 국가 정책, 이해관계자 의견, 사회적 공감대,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속해서 보완될 예정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2050 탄소중립 비전 및 2030·2035 NDC 목표와 정합되도록 단계적·점진적으로 개발·보완되어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0년부터 산업계, 금융계, 정부 부처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자문 및 협의체(포럼 등)를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개발·고도화하고 있다.

2021년 4월 말 범부처 의견수렴과 2021년 5월 1차 이해관계자 간담회(이하 ‘의견수렴’이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후 2021년 6월 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1차 수정안을 마련하고 50여 개 산업계, 금융계, 정부 부처,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2차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2차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3차 의견수렴은 6월 말 설명회 형태로 개최되었으며, 산업계, 금융계, 정부 부처, 시민사회, 전문가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2차 수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했다.

8월 초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3차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업종별 10개 부문 협의체를 구성하여 4차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이후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10월 중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4차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5차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국회, 탄소중립위원회(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최종본을 마련하였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2021년 12월 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발표 당시 향후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보완 기후위임법률 초안을 발표(‘22.3.9)하였고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등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22.7.11)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2년 2월부터 전문가 자문, 세부 협의체(사고저항성핵연료, 원자력산업, 시민사회 등 11개 분과)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9월 20일,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신규건설)’,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계속운전)’으로 구성된 3개의 원전 경제활동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초안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 산업계·금융계·학계·시민사회 등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외에도 국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2024년에는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등을 포함한 4개 환경목표에 대해 2023년 제시된 유럽연합 분류체계의 관련 경제활동과 국내 경제활동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초안을 개발하였으며, 2024년 6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부처,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320여명의 위원이 참여한 17개 분과별 협의체(분과별 2~3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일부 개정본을 마련하였다.

2025년에는 그간 개정되지 않은 기후변화 관련 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를 대상으로 변화된 국내 정책·산업·기술 여건 등을 반영하여 초안을 도출하였으며, 6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정부 부처, 시민단체, 금융권 등을 포함한 290여 명의 위원이 참여한 13개 분과별 협의체(분과별 2회)와 별도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최종 개정본을 마련하였다.

가. 개념 및 원칙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개념,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개념 :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자발적 지침서

(2) 원칙 : 녹색경제활동은 다음 3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①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SC: Substantial Contribution)

※ 6대 환경목표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②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DNSH: Do No Significant Harm)

③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MS: Minimum Safeguards)



나. 구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세부 경제활동 총 100개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인 ‘녹색부문’과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인 ‘전환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녹색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로 구분되며, 93개 녹색경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생산, 수소 및 암모니아 제조,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 제조 등 경제활동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히 기여하는 활동 위주로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수렴하여 녹색 경제활동과 연계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혁신품목 제조, 연구·개발·실증, ICT 등 4개의 공통 경제활동을 마련하였다.

한편, 2022년 기준 에너지·산업공정 분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724.3백만톤CO₂ eq.)의 약 94%를 차지하며, 그 중 금속, 화학, 광물산업의 배출량(연료연소, 공정배출 포함)은 약 30%에 달한다.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화가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이거나 현재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 기술이 개발 중이므로 동일계열 내 최상의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다배출 업종의 제품 제조 활동(철강, 시멘트, 기초화학물질)도 녹색부문에 포함하였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히 기여하는 설비의 경우 EU 분류체계에 포함한 바 있다. 또한 제조 및 서비스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 별도로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녹색부문’에 포함하였다.

‘녹색부문’에서는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제시하였으며 석탄 등 고체 화석연료를 100% 활용하는 경제활동이거나 이와 연계된 경제활동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다. ‘전환부문’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최종지향점이 아니므로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으로 볼 수는 없지만, 현재 단계에서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전환부문’으로 분류된 경제활동은 총 7개로,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활동,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신규건설),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계속운전), 블루수소 제조, 친환경 선박 건조, 친환경 선박 운송이다. 이러한 경제활동은 화석연료를 일부 포함하지만, 중간단계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므로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였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으로, 재생 에너지와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30·2035 NDC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 할 수 있어 한시적으로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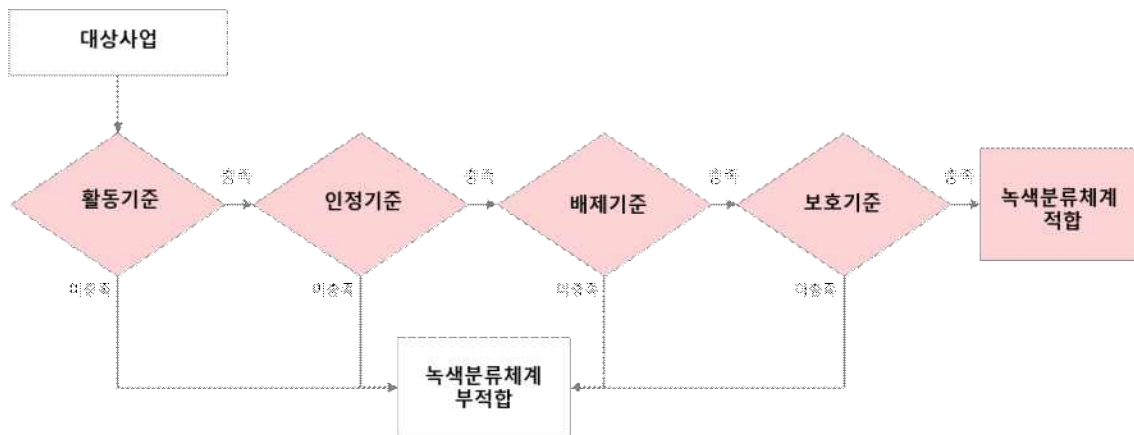
아울러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포함된 경제활동에 대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대출, 투자, 구매, 리스, 할부 등)를 제공하는 활동도 녹색경제 활동으로 인정한다.

‘녹색부문’ 및 ‘전환부문’ 중 일부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이나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업계 전반적으로 전과정평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전과정평가에 필요한 국가 전과정 목록(LCI; Life Cycle Inventory) 데이터베이스 또한 완비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전과정평가 분야 협의체를 통해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적용 예정인 경제활동에 대해 2025년부터의 도입가능성 등을 검토하였으나, 아직은 LCA 기반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산정기준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녹색분류 체계의 안정적 적용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을 제시한다. 향후 배출량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가능성이 담보되고, LCA 기반(LCI DB, 지침 등)이 구축되는 현황을 고려하여 도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다. 적용 대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서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2022)’ 또는 ‘녹색여신 관리지침(2024)’에 따른 녹색 사업/활동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판단 절차를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아가 녹색펀드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 및 기업과 금융기관 공시 전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녹색 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 ① 활동기준 판단: 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부합하는지 판단
- ② 인정기준 판단: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 ③ 배제기준 판단: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 ④ 보호기준 판단: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

※ 기준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경제활동과 관련된 국내 법령, 고시, 지침, 기준 등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별 적합성판단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자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활용 가능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를 별도로 개발하여 공개하였으며, 환경 책임투자 종합플랫폼(gmi.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참고] 배제기준(심각한 환경피해 판단)의 사례

○ 에너지

- 태양광 부지 확보 시 대규모 토지 조성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 태양광 패널 냉각 관련 물 사용에 따른 하천 또는 지하수 오염
- 풍력발전 부지 확보 시 토지 조성 과정에서 생태계 및 서식지 파괴
- 바이오매스 발전에 사용되는 목재펠릿, 목재칩 관련 불법 벌채
- 재생에너지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폐수,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등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 등

○ 제조업

- 무공해 자동차 부품 제조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속 원자재의 채굴·사용·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 철강, 시멘트 등 주요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폐수,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등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 등

○ 건축물

-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와 폐기물 방치, 토양 오염
- 그린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 등 유해 폐기물의 대기 확산
- 불법 벌채로 확보된 목재의 사용 등

○ 수송·물류

- 무공해 자동차·선박 등 운송수단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폐기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방치 문제
- 수송·물류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와 토양 오염 등

○ 오염 방지

- 하수 슬러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오염
- 토양오염 복원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폐수,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등의 적정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생기는 각종 환경오염 등

○ 자원순환

- 폐기물의 자원순환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 및 오염물질의 허가기준 초과 등

○ 농업 및 생물다양성 보전

- 과다한 비료 사용으로 인한 하천 또는 지하수 오염
- 과다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 건강 악화

기업과 금융기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판단을 기초로 녹색경제활동을 구분·선별·판단하거나,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적합성판단 기준을 이미 충족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적합성판단 기준의 충족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경제활동 수행 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 환경 개선 관련 지표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측정·기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은 투자 또는 여신 등을 제공한 프로젝트나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모니터링 결과 활동·인정·배제·보호기준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녹색경제활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기업과 금융기관은 투·융자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환경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한다. 이에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감축량이 어느 정도인지 참고용으로 확인·추정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기반 환경개선효과 산정방법론을 2024년부터 개발하여 공개하고 있다. 기존의 외부사업 방법론,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 등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차용하여, 사용자(금융기관 등) 측면에서 활용하기 쉽게 구성하였으며,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gm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말 현재 37개 경제활동에 대하여 약 70개의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감축량 관련 산정방법론이 공개되어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금융기관의 녹색 기준 판단 시 기업의 국내·외 활동에 적용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단위 외에도 향후 사업 부문 단위, 기업 단위까지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기업 단위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 경제활동 비중을 평가하는 경우,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 발생된 매출액을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으로 나누어 그 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포트폴리오의 녹색금융상품 투자 성과를 평가할 때는 투자 대상기업의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충족 비율을 먼저 도출하고,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대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곱하여 녹색경제활동에 해당하는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이 기업에 제공하는 시설자금대출 및 운영자금대출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시설자금대출의 경우,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제공된 금융기관의 여신 규모가 해당 금융기관의 녹색여신 성과가 될 것이다. 한편, 운영자금대출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특정 기업 운영자금에 제공한 여신 규모에,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대비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비중을 곱한 금액이 해당 금융기관의 녹색여신 성과로 산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 여신, 펀드 등 금융상품별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녹색금융상품 비중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전체 자산 대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자산 비중을 공개할 수 있다. 단, 적합성판단 결과 및 비중 정보공개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간의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이처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관련한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액 등의 핵심 성과지표(KPIs: Key Performance Indicators)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업의 투자와 금융기관의 활동을 녹색경제활동으로 연계 시킴으로써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한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그 동등성을 검토하여 적합성판단을 수행할 수 있다. 적합성판단 수행 시에는 해당국의 법적 기준과 규제를 우선 적용하되, 해당 기준이 국내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관련된 기준이 없을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환경기준이나 권고지침, 국제표준 등을 따라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정책, 국제동향,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2023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적용과 함께,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발굴하면서, 녹색분류체계 확산 및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한국형 녹색채권)의 경우, 2022년 시범 적용으로 6,400억원 규모가 발행되었으며, 이후 국내 원화 녹색채권 시장의 약 70~80%가 한국형 녹색채권으로 발행되고 있다. 2023년 약 4조 7천억원, 2024년 약 5조 2천억원, 2025년 약 5조 2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이 발행되어 그린워싱 예방과 국내 녹색산업의 성장을 통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공모채 발행시장에 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자산유동화증권 형태를 결합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 Green Asset-Backed Securitization) 상품을 2023년 처음 개발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녹색금융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2023년 약 1,500억원, 2024년 약 3,200억원, 2025년 약 3,200억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되어 다수의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이해도를 높이며 녹색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프로젝트 중심의 녹색채권 발행에 적용(2023~)되는 것을 시작으로,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에도 적용(2025~)되어 금융회사의 그린워싱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녹색부문에 민간자금 공급이 확대되도록 기여하며, 추후 녹색펀드 등으로 확대 예정이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와 관련된 자산 비중, 매출액 규모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제도와 연계해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녹색 위장행위(그린워싱)를 예방하면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지속적으로 보완될 예정이며,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문의 또는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https://gmi.go.kr>)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2 장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구 성 도	분류명 및 구성 내용
부문 목표 분야 활동 기준	▶ (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 지향단계를 분류하는 것으로, 제1절 녹색부문, 제2절 전환부문으로 구성 ▶ (목표) 6대 환경목표를 분류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 1. 온실가스 감축, 2. 기후변화 적응, 3.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4. 순환경제로의 전환, 5. 오염 방지 및 관리, 6. 생물다양성 보전 ▶ (분야) 목표 내 공통된 특징을 갖는 것끼리 묶은 것으로, 22개 분야로 구성 ▶ (활동)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100개 경제활동으로 구성 ▶ (기준) 판단 기준을 분류하는 것으로, ①활동기준, ②인정기준, ③배제기준, ④보호기준으로 구성

분야	경제활동		설명
제1절 녹색부문 : 공통			
가. 산업	(1)	혁신품목 제조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 제조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나. 연구개발	(1)	연구·개발·실증	연구·개발·실증(RD&D;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과 관련된 제반* 활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나 이에 준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활동
다. ICT	(1)	ICT 솔루션 개발 및 시스템 구축·운영	ICT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제1절 녹색부문 : 1. 온실가스 감축			
가. 산업	(1)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제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기술을 활용하는 제조활동에 필요한 생산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기술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의 생산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3)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 제조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결광·코크스·선철 또는 철광석을 이용한 선철 통합 생산, 전로 또는 전기아크로를 이용한 조강 반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최적가용기법(BAT)으로 철강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4)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멘트 제조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회색클링커 소성시설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5)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초화학물질 제조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해로를 이용한 올레핀 생산, 방향족 생산, 부타디엔 생산, 스티렌 모노머 생산, 질산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6)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 제조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 하는 활동
	(7)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디스플레이 제조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 운영하는 활동
	(8)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연료전환, 에너지 절감, 자원효율 개선 등 온실 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제조업, 서비스업에 폭넓게 적용하되 발전, 수송 등 다른 분야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활동에는 본 기준 적용 불가
나. 발전·에너지	(1)	바이오에너지 제조	(1) 바이오매스, (2) 바이오가스, (3)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4) 바이오 항공유, (5)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청정메탄올 제조	청정메탄올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분야	경제활동	설명
	(3) 수소 제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4) 암모니아 제조	암모니아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5) 태양광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6) 태양열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태양열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7) 풍력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8) 수력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수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9) 해양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해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10) 지열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지열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11) 수열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열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수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12) 바이오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훈소 제외)
	(13) 폐기물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훈소 제외)
	(14) 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1) 수소 (2) 암모니아 또는 (3) 수소-암모니아 혼소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다만, 상기 외의 연료를 포함하는 혼소제외)
	(15)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스를 혼합*하여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부생가스·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중 두 가지 이상 혼합하되,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포함한 가스
	(16) 폐열·냉열·감압(폐압)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1) 폐열, (2) 냉열, (3) 감압(폐압)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17) 전기 에너지 저장·전환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1)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 직접 저장, (2) 화학에너지인 수소로 전환, (3) 화학에너지인 암모니아로 전환, (4) 열에너지로 전환, (5) 양수발전을 위한 위치에너지로 전환/저장/전력계통에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18) 열에너지 저장	열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지하 열에너지 저장시설(UTES; Underground Thermal Energy Storage), 대수층 열에너지 저장시설(ATES; Aquifer Thermal Energy Storage) 등

분야	경제활동		설명
	(19)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저장	수소 또는 암모니아의 저장 설비(예 : 액화수소로 변환 및 저장 설비* 등)를 구축·개조·운영하는 활동 * 수소를 충전·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하는 저장 탱크(수소의 품질을 균질화하기 위한 설비 포함)
	(20)	재생에너지 관련 송배전 인프라 구축·운영	재생에너지 관련 송배전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1)	히트펌프 구축·운영	재생열원(지열·수열 등) 또는 공기열 등 저탄소 열원을 활용한 히트펌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2)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청정메탄올 이송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바이오가스, 수소, 암모니아, 청정메탄올의 이송을 위한 (1)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개조·운영하거나 (2) 탱크로리 및 선박 등을 통해 이송하는 활동
	(23)	폐열·냉열 공급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미활용 (1) 폐열, (2) 냉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에너지의 공급 인프라를 구축·개조·운영하는 활동
다. 수송	(1)	무공해 차량·원동기장치 자전거·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제조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생산 또는 개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전거로서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및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것을 포함함
	(2)	무공해 차량·원동기장치 자전거·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도입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를 도입하는 활동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전거로서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및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것을 포함함
	(3)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1) 전기충전소,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전력망 접속 개선, 수소연료 공급시설, 전기고속도로, 전기철도시설 등의 저탄소 육상 인프라, (2) 육상전원공급장치(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전력망 접속 개선,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항만 하역장비, 수소연료공급시설,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설 등 저탄소 수상 인프라, (3)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와 관련된 공유 운송 인프라, (4) 보행자 전용 도로, 자전거도로 등 도보 및 자전거 인프라, (5)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상쇄의무량을 준수하기 위한 저탄소 항공 인프라, (6)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지상조업 장비, 화물환적 장비, 전기·수소 충전소 등 저탄소 공항 인프라, (7) 바이오선박유,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저탄소 연료*를 운송수단에 주입하기 위한 공급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거나 석유제품에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한다)로서 바이오연료(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재생합성 연료(수소와 재생탄소를 합성하여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대체연료

분야	경제활동	설명
라. 도시·건물	(1)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 개발·운영	(1) 신규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를 개발하거나, (2) 기존 도시를 제로 에너지 특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를 개발·운영하는 활동
	(2) 재생에너지 특화 지역 개발·운영	(1) 신규 재생에너지 특화 지역을 개발하거나, (2) 기존 지역을 재생 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을 개발·운영하는 활동
	(3)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1) 건물 신축, (2) 기존 건물 그린리모델링, (3) 건물 취득하는 활동
	(4)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주거용, 상업용 등 (1) 건축물 자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2) 건축물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필요한 설비,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5) 저탄소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데이터센터를 신규로 구축·운영하거나 기존 설비의 개조를 위해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 설비,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마. 농·축산업	(1) 저탄소 농업·축산업	농작물재배업* 및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술이나 방법을 적용하는 활동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
	(2) 저탄소 사료 및 대체식품 제조	(1) 메탄저감제, (2) 저메탄사료, (3) 질소저감사료를 제조하거나, (4) 대체식품(세포배양식품, 식물성 대체식품, 식용곤충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3) 바이오차(Biochar) 제조 및 토양 살포	바이오차* (1) 제조 및 (2) 토양 살포를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바이오차(Biochar):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열분해(탄화)하여 제조한 것
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시설(포집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국내외에서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용기나 시설에 모으는 것
	(2)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수송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수송*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이산화탄소를 국내외에서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에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
	(3)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저장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포집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국내외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주입하여 대기와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
	(4)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활용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기술 개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인간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여 자원으로써 산업에 이용하거나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배출가스를 직접 이용하는 것

분야	경제활동		설명
사. 임업	(1)	산림 기반 탄소흡수원 조성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2호 및 제2조3호에 따라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인위적인 식재, 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 등을 통해 산림에 기반한 탄소흡수원을 조성하는 활동
	(2)	국산목재제품 이용	국내 산림으로부터 수확된 원목 또는 이를 가공하여 생산된 목제품을 이용하는 활동 (단, 연료용으로 이용되는 목재나 제지류, 포장재 등과 같이 장기적 탄소저장 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제품 이용 및 일반적인 범용 가공 설비 제외)
제1절 녹색부문 : 2. 기후변화 적응			
가.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1)	기후변화 감시 및 진단	지상·해양·대기 관측망의 구축·운영 또는 이에 필요한 관측장비를 제조하는 활동
	(2)	기후변화 예측	(1) 과학적·통계적 기법, 수치 모델링 등을 이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활동, (2) 기후변화 시나리오 또는 실시간 기후 데이터를 이용해 기후·기후변화 예측 모델 또는 예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거나, 산업별 또는 지역별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활동
나.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평가	(1)	기후변화 영향평가	에너지 개발, 도시 개발, 수자원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도로·공항 건설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적응 대책을 수립하는 활동
	(2)	취약성·위험성 평가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도, 민감도, 적응능력 등 주요 평가 요소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산업·부문의 기후영향과 기후 취약성, 기후리스크를 진단·측정하기 위해 (1) 모델·시스템을 개발하거나, (2) 평가 또는 통합기후위험 지도 및 위험성 지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분석·평가하는 활동
다. 기후위기 대응 역량 제고	(1)	취약한 계층·지역 보호 및 지원	(1) 기후변화로 인해 노인, 아동, 저소득계층, 야외노동자, 농·어업종사자, 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 지리적 여건으로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회복력이 낮은 계층을 건강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회복력을 강화*하거나 (2) 산업구조 전환으로 인해 고용환경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식별하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활동 * 폭염·한파·홍수 등 기후재해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대상별 맞춤형 기후적응시설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등
	(2)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교육·홍보·문화·예술 활동	기업·정부·국민 대상으로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기적·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기후변화 관련 (1) 교육(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포함), (2) 홍보·문화·예술 활동(홍보·캠페인, 기후정보 제공, 공연·전시·체험·워크숍 등)
	(3)	기후보험 및 재보험	기후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영향 및 재난(홍수·가뭄, 폭염·한파, 태풍, 산불 등)에 따른 손실 및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및 재보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보험 상품의 설계, 상품인수, 위험평가 및 관리, 피해 보상 등의 활동(생명보험 제외) ※ 국내 기후보험 상품 제도 개발 시 관련 기준 재검토

분야	경제활동		설명
라.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강화	(1)	기후위험 예방·대비·대응·복구(물 부문)	기후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영향 및 재난(수온 상승, 홍수, 가뭄 등)으로 인한 수자원 인프라 및 수생태계 파괴, 수질 악화, 물순환 체계 위협 등 물 분야 물리적 피해를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설비·시설을 제조·구축·운영하는 활동 ※ 단, 다른 환경 목표에 중복 해당하는 경제활동의 경우, 본 환경목표가 아닌 해당 환경목표의 경제활동으로 적용
	(2)	기후위험 예방·대비·대응·복구(산림·생태계 부문)	기후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영향 및 재난(산불, 산사태, 병충해 등)으로 인한 산림 파괴, 생태계 다양성 및 생태기능 악화, 산림자원 손실 등의 피해를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해 산림·생태계 관리에 필요한 설비·시설을 제조·구축·운영하는 활동 ※ 단, 다른 환경 목표에 중복 해당하는 경제활동의 경우, 본 환경목표가 아닌 해당 환경목표의 경제활동으로 적용
	(3)	기후위험 예방·대비·대응·복구(국토·연안 부문)	기후변화 관련 재난(해수면 상승, 연안 침식, 풍수해, 폭염 등)으로 인한 국토 인프라 및 연안 지역의 손상, 지반 약화, 도시·주거·교통체계의 기능 저하 등 피해를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설비·시설을 제조·구축·운영하는 활동 ※ 단, 다른 환경 목표에 중복 해당하는 경제활동의 경우, 본 환경목표가 아닌 해당 환경목표의 경제활동으로 적용
	(4)	기후피해 예방·대비·대응·복구(농수산 부문)	기후변화 관련 재난(가뭄, 폭염, 냉해, 수온 상승 등) 및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생산기반 및 생물자원의 손상, 생산량 감소, 농어촌 경제 피해 등을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농수산 기반 설비·시설을 제조·구축·운영하는 활동 ※ 단, 다른 환경 목표에 중복 해당하는 경제활동의 경우, 본 환경목표가 아닌 해당 환경목표의 경제활동으로 적용
제1절 녹색부문 : 3.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가. 물	(1)	물 공급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원수를 취수 또는 정수하거나 이를 배관을 통해 급수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물 수요 관리	물 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1) 상수도 관망을 관리(세척,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등)하거나 (2) 절수설비·기기를 보급·설치하는 활동
	(3)	하수·폐수 처리 및 가축분뇨 정화	(1) 하수·분뇨, (2) 폐수, (3)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정화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단,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은 '1-나-(1) 바이오에너지 제조' 또는 '4-라-(2) 폐기물 재생이용' 경제활동을 적용)
	(4)	지하수 오염 방지 및 정화	(1)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거나, (2)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분야	경제활동		설명
	(5)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	지하시설물이나 건축물 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로 인하여 자연히 흘러 나오는 유출지하수를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 및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공원용수, 청소용수, 클린로드(도로세척), 지하수열 활용, 쿨링포그, 지하수함양 등
	(6)	물 재이용	(1) 빗물이용시설, (2) 중수도, (3)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 (4) 물 재이용수 활용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물 재이용수를 외부 공급받아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시설에 한정
	(7)	대체 수자원 활용	하천수, 지하수, 댐 용수 이외의 해수담수화, 강변여과수, 인공함양 저류지 등 대체 수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8)	비점오염저감(저영향 개발(LID) 등)	자연형 시설, 저영향 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 시설, 장치형 시설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제1절 녹색부문 : 4. 순환경제로의 전환			
가. 생산	(1)	재생원료·순환자원 생산	(1) 재생원료 또는 (2) 순환자원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재생원료·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	(1) 재생원료 및 (2) 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 또는 포장재의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3)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	재활용이 용이한 (1) 포장재, (2) 제품의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나. 소비	(1)	다회용기 활용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2)	되채우기 매장(리필스테이션) 구축·운영	불필요한 포장재 소비를 줄이기 위해 내용물만 판매하는 리필스테이션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다. 관리	(1)	폐기물 수거·회수·선별·분리	폐기물의 (1) 수거·회수 또는 (2) 선별·분리를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단, 매립 또는 소각만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제외
	(2)	사용 후 제품의 오염 제거 및 해체	자원 회수 또는 부품 재사용을 위해 사용 수명이 다한 (1) 폐전기·전자제품 (2) 폐자동차 또는 (3) 폐선박에서 오염물을 제거하거나 이를 해체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라. 재생	(1)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재사용하기 위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사용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폐기물 재생이용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이용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단,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강·시멘트·유기화학물질 제조의 경우 적용 제외)
	(3)	폐기물 재제조	재활용가능자원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재제조를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4)	폐기물의 화학적 재활용	폐기물을 열분해, 해중합, 용매추출, 가스화 방식을 통해 (1) 원료 또는 (2) 연료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분야	경제활동		설명
	(5)	폐기물 에너지 회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인 (1)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2)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3) 가연성 폐기물로 고형연료제품(SRF)을 만드는 활동, (4) 정제, 유화 등의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으로 정제연료유나 재생연료유 등 유류를 만드는 활동(폐유 정제유 등)을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6)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매립장의 매립가스를 연료, 원료 등으로 포집 및 처리·활용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제1절 녹색부문 : 5. 오염 방지 및 관리			
가.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1)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입자상물질,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대기환경보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대기 오염물질에 대하여 (1) 사전 예방·저감, 처리, (2) 측정·감시하기 위한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악취 방지 및 저감	악취 방지 또는 저감을 위한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3)	실내공기질 관리 및 정화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1) 제거·저감 및 처리, (2) 측정·감시하기 위한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나.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1)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물질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등의 (1) 배출방지, (2) 배출된 오염물의 확산방지·제거, (3) 수거·처리(정화)를 위한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다. 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	(1)	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	(1) 토양오염 방지 또는 (2) 오염된 토양 정화 또는 (3) 정화도를 활용하기 위한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단, 성토·복토 등 되메우기를 목적으로 정화도를 활용하는 활동은 제외)
제1절 녹색부문 : 6. 생물다양성 보전			
가. 생물 다양성	(1)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복원·복원	(1) 육상생태계 및 보호지역, (2) 해양생태계 및 보호지역의 보호·보전·복원을 위한 활동 (단, 육상 및 해양생태계를 훼손시킨 후 보호·복원·보전하는 경우는 제외)
	(2)	생물종 보호·보전·복원	(1) 야생생물을 보호·보전·복원하거나, (2)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의 유입 방지 등 관리를 위한 활동 (단, (1)의 경우 중 (2)에 해당하는 생물종의 보호·보전·복원 활동은 제외)
	(3)	도시 내 생태공간 조성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도시 내 생태공간을 조성하는 활동
	(4)	지속 가능한 산림 유지·관리	산림을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는 활동

분야	경제활동		설명
제2절 전환부문 : 1. 온실가스 감축			
가. 산업	(1)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연료전환, 에너지 절감, 자원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관련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나. 발전·에너지	(1)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또는 혼합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부생가스·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중 두 가지 이상 혼합한 가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기술개발(무탄소 혼소, CCS 등) 수준 등을 감안하여 2030~2035년까지 공사계획을 인가받은 설비에 대해 인정
	(2)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 (신규건설)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원자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2045년까지 건설 허가를 받은 설비에 대해 인정
	(3)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 (계속운전)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어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개조하는 활동 ※ 2045년까지 계속운전을 허가받은 설비에 대해 인정
	(4)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수소(블루수소) 제조	액화천연가스(LNG) 기반으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다. 수송	(1)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친환경 선박 기자재 제조	(1) 친환경 선박의 건조, 개조, 유지관리 또는 (2) 친환경 선박 기자재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2)	친환경 선박 도입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는 활동 ※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판단 기준

CONTENTS

제1절 녹색부문

⋮

공통	41
가. 산업	41
(1) 혁신품목 제조	41
(2) 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 제조	42
나. 연구개발	43
(1) 연구·개발·실증	43
다. ICT	44
(1) ICT 솔루션 개발 및 시스템 구축·운영	44
1. 온실가스 감축	45
가. 산업	45
(1)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제조	45
(2)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46
(3)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 제조	47
(4)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멘트 제조	48
(5)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초화학물질 제조	49
(6)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 제조	50
(7)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디스플레이 제조	51
(8)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	52
나. 발전·에너지	53
(1) 바이오에너지 제조	53
(2) 청정메탄올 제조	54

CONTENTS

⋮

(3) 수소 제조	55
(4) 암모니아 제조	56
(5) 태양광 기반 에너지 생산	57
(6) 태양열 기반 에너지 생산	58
(7) 풍력 기반 에너지 생산	59
(8) 수력 기반 에너지 생산	60
(9) 해양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61
(10) 지열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62
(11) 수열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63
(12) 바이오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64
(13) 폐기물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65
(14) 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	66
(15)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67
(16) 폐열·냉열·감압(폐압) 기반 에너지 생산	68
(17) 전기 에너지 저장·전환	69
(18) 열에너지 저장	70
(19)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저장	71
(20) 재생에너지 관련 송배전 인프라 구축·운영	72
(21) 히트펌프 구축·운영	73
(22)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청정메탄올 이송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74
(23) 폐열·냉열 공급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75

CONTENTS

⋮

다. 수송	76
(1) 무공해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 선박·항공기·자전거 제조	76
(2) 무공해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 선박·항공기·자전거 도입	77
(3)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78
라. 도시·건물	79
(1)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 개발·운영	79
(2) 재생에너지 특화 지역 개발·운영	80
(3)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81
(4)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82
(5) 저탄소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83
마. 농·축산업	84
(1) 저탄소 농업·축산업	84
(2) 저탄소 사료 및 대체식품 제조	85
(3) 바이오차(Biochar) 제조 및 토양 살포	86
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87
(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87
(2)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수송	88
(3)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저장	89
(4)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활용	90

CONTENTS

⋮

사. 임업	91
(1) 산림 기반 탄소흡수원 조성	91
(2) 국산목재제품 이용	92
2. 기후변화 적응	93
가.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93
(1) 기후변화 감시 및 진단	93
(2) 기후변화 예측	94
나.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평가	95
(1) 기후변화 영향평가	95
(2) 취약성·위험성 평가	96
다. 기후위기 대응 역량 제고	97
(1) 취약한 계층·지역 보호 및 지원	97
(2)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교육·홍보·문화·예술 활동	98
(3) 기후보험 및 재보험	99
라.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강화	100
(1) 기후위험 예방·대비·대응·복구(물 부문)	100
(2) 기후위험 예방·대비·대응·복구(산림·생태계 부문)	101
(3) 기후위험 예방·대비·대응·복구(국토·연안 부문)	102
(4) 기후피해 예방·대비·대응·복구(농수산 부문)	103

CONTENTS

⋮

3.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104
가. 물	104
(1) 물 공급	104
(2) 물 수요 관리	105
(3) 하수·폐수 처리 및 가축분뇨 정화	106
(4) 지하수 오염 방지 및 정화	107
(5)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	108
(6) 물 재이용	109
(7) 대체 수자원 활용	110
(8) 비점오염저감(저영향 개발(LID) 등)	111
4. 순환경제로의 전환	112
가. 생산	112
(1) 재생원료·순환자원 생산	112
(2) 재생원료·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	113
(3)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	114
나. 소비	115
(1) 다회용기 활용	115
(2) 되채우기 매장(리필스테이션) 구축·운영	116
다. 관리	117
(1) 폐기물 수거·회수·선별·분리	117
(2) 사용 후 제품의 오염 제거 및 해체	118

CONTENTS

⋮

라. 재생	119
(1) 폐기물 재사용	119
(2) 폐기물 재생이용	120
(3) 폐기물 재제조	121
(4) 폐기물 화학적 재활용	122
(5) 폐기물 에너지회수	123
(6)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124
5. 오염 방지 및 관리	125
가.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125
(1)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125
(2) 악취 방지 및 저감	126
(3) 실내공기질 관리 및 정화	127
나.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128
(1)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128
다. 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	129
(1) 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	129

CONTENTS

⋮

6. 생물다양성 보전	130
가. 생물다양성	130
(1)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보전·복원	130
(2) 생물종 보호·보전·복원	131
(3) 도시 내 생태공간 조성	132
(4) 지속가능한 산림 유지·관리	133

제2절 전환부문

1. 온실가스 감축	134
가. 산업	134
(1)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134
나. 발전·에너지	135
(1)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135
(2)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신규건설)	136
(3)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계속운전)	137
(4)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수소(블루수소) 제조	138
다. 수송	139
(1)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친환경 선박 기자재 제조	139
(2) 친환경 선박 도입	140

제1절 | 녹색부문

공통 / 공통

가. 산업

(1) 혁신품목 제조

① 활동기준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6대 환경목표	‘붙임7.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에 해당하는 활동인가?			택 1	
	[6대 환경목표 선택]				
	온실가스 감축	☐	순환경제로의 전환		☐
	기후변화 적응	☐	오염 방지 및 관리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생물다양성 보전		☐
③ 배제기준					
이외 환경목표	인정기준에서 선택하지 않은 환경목표에 대한 공통 배제기준(붙임 1~6 중)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2) 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 제조

① 활동기준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6대 환경목표	‘붙임7.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에 해당하는 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활동인가?			택 1	
	[6대 환경목표 선택]				
	온실가스 감축	☐	순환경제로의 전환		☐
	기후변화 적응	☐	오염 방지 및 관리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생물다양성 보전		☐
③ 배제기준					
이외 환경목표	인정기준에서 선택하지 않은 환경목표에 대한 공통 배제기준(붙임 1~6 중)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나. 연구개발

(1) 연구·개발·실증

① 활동기준					
연구·개발·실증(RD&D;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과 관련된 제반* 활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나 이에 준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6대 환경목표	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활동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개발·실증 활동인가? 또는			택 1	
	[6대 환경목표 선택] 택 1				
	온실가스 감축	☐	순환경제로의 전환		☐
	기후변화 적응	☐	오염 방지 및 관리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생물다양성 보전		☐
온실가스 감축	나.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붙임8. 녹색분류체계 관련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목록에 해당하는 활동인가? 또는			☐	
	다.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 활동인가? 또는 * (1)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2) 핵연료주기에서 방사성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차세대원전 기술, (3) 사고저항성핵연료(ATF; Accident Tolerant Fuel), (4) 방사성폐기물관리, (5) 원전해체, (6) 연구용원자로, (7) 해양용 (초)소형원자로, (8) 핵융합, (9) 내진성능 향상, 스마트플랜트 구축 등 원전 안전성 및 설비 신뢰도 향상			☐	
기후변화 적응	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각 환경목표에 기여하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1] 환경기술 분류체계에 해당하는 활동인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순환경제로의 전환				☐	
오염 방지 및 관리				☐	
생물다양성 보전				☐	
③ 배제기준					
이외 환경목표	인정기준에서 선택하지 않은 환경목표에 대한 공통 배제기준(붙임 1~6 중)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다. ICT

(1) ICT 솔루션 개발 및 시스템 구축·운영

① 활동기준																				
ICT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6대 환경목표	녹색부문에 포함된 활동과 관련된 ICT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택 1																
	<table border="1"> <tr> <th colspan="4">[6대 환경목표 선택]</th> </tr> <tr> <td>온실가스 감축</td> <td>☐</td> <td>순환경제로의 전환</td> <td>☐</td> </tr> <tr> <td>기후변화 적응</td> <td>☐</td> <td>오염 방지 및 관리</td> <td>☐</td> </tr> <tr> <td>물의 지속가능한 보전</td> <td>☐</td> <td>생물다양성 보전</td> <td>☐</td> </tr> </table>				[6대 환경목표 선택]				온실가스 감축	☐	순환경제로의 전환	☐	기후변화 적응	☐	오염 방지 및 관리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생물다양성 보전	☐
	[6대 환경목표 선택]																			
	온실가스 감축	☐	순환경제로의 전환		☐															
	기후변화 적응	☐	오염 방지 및 관리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생물다양성 보전	☐																	
※ 대상 경제활동의 활동·인정·배제·보호 기준을 충족하면서 해당 경제활동과 직접 연계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설치·운영·유지·보수되는 ICT 솔루션·시스템·서비스만 포함하며, 일반적인 기업 운영 목적의 ICT 구축·운영 활동은 제외됨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인정기준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기후변화 적응	해당 없음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해당 없음			☐																
순환경제로의 전환	해당 없음			☐																
오염 방지 및 관리	해당 없음			☐																
생물다양성 보전	해당 없음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1

온실가스 감축

가. 산업

(1)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제조

① 활동기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기술을 활용하는 제조활동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8. 녹색분류체계 관련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목록에 해당하는 활동인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2)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① 활동기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기술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의 생산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8. 녹색분류체계 관련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목록에 해당하는 활동인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3)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 제조

① 활동기준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결광·코크스·선철 또는 철광석을 이용한 선철 통합 생산, 전로 또는 전기 아크로를 이용한 조강 반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최적가용기법(BAT)으로 철강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신설·증설·개조하려는 '소결광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26530톤 CO ₂ eq./제품 톤(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
	나. 신설·증설·개조하려는 '코크스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25131톤 CO ₂ eq./제품 톤(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
	다. 신설·증설·개조하려는 '선철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1.2249톤 CO ₂ eq./제품 톤(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
	라. 신설·증설·개조하려는 '철광석을 이용한 선철 통합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1.6663톤 CO ₂ eq./제품 톤(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
	마. 신설·증설·개조하려는 '전로를 이용한 조강 반제품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15709톤 CO ₂ eq./제품 톤(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
	바. 신설·증설·개조하려는 '전기아크로를 이용한 조강 반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26368톤 CO ₂ eq./제품 톤(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
	사. 신설·증설·개조하려는 제철 설비가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가? * 상기 최적가용기법 인정기준은 국내 철강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술 목록이 제정되면 검토 예정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4)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멘트 제조

① 활동기준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회색클링커 소성시설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신설·증설·개조하려는 ‘회색클링커 소성시설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77692톤 CO ₂ eq./제품 톤(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5)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초화학물질 제조

① 활동기준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해로를 이용한 올레핀 생산, 방향족 생산, 부타디엔 생산, 스티렌 모노머 생산, 질산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신설·증설·개조하려는 ‘분해로를 이용한 올레핀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39311톤 CO ₂ eq./제품 톤(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
	나. 신설·증설·개조하려는 ‘방향족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원료 투입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16367톤 CO ₂ eq./원료 톤(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
	다. 신설·증설·개조하려는 ‘부타디엔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원료 투입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18624톤 CO ₂ eq./원료 톤(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
	라. 신설·증설·개조하려는 ‘스티렌 모노머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39277톤 CO ₂ eq./제품 톤(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
	마. 신설·증설·개조하려는 ‘질산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059576톤 CO ₂ eq./제품 톤(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6)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 제조

① 활동기준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신설·증설·개조하려는 ‘반도체 생산공정에서의 F가스 공정가스 처리’ 관련 설비의 온실가스 원단위가 0.086133톤 CO ₂ eq./톤 CO ₂ eq. (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
	나. 신설·증설·개조하려는 ‘반도체 생산공정에서의 N ₂ O가스 공정가스 처리’ 관련 설비의 온실가스 원단위가 0.041027톤 CO ₂ eq./톤 CO ₂ eq. (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7)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디스플레이 제조

① 활동기준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신설·증설·개조하려는 ‘디스플레이 생산공정에서의 F가스 공정가스 처리’ 관련 설비의 온실가스 원단위가 0.059743톤 CO ₂ eq./톤 CO ₂ eq. (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
	나. 신설·증설·개조하려는 ‘디스플레이 생산공정에서의 N ₂ O가스 공정가스 처리’ 관련 설비의 온실가스 원단위가 0.52057톤 CO ₂ eq./톤 CO ₂ eq. (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8)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

① 활동기준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연료전환, 에너지 절감, 자원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제조업, 서비스업에 폭넓게 적용하되 발전, 수송 등 다른 분야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활동에는 본 기준 적용 불가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공정·설비를 신설·증설·개조하는 사업이 기존 공정·설비의 과거 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내용연수×△2.9%* 이상을 일시에 감축시키는가? * 신설·증설·개조하는 공정·설비의 내용연수(한국부동산원 유형고정자산 내용연수 기준)에 비례하여 프로젝트 단위로 감축량을 설정하며, 이때 신설하는 사업의 경우 국내 동종 공정 또는 설비 대비 기준으로 산정 (예시 : 내용연수가 10년인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29%(=10년×△2.9%), 내용연수가 5년인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14.5%(=5년×△2.9%) 이상 일시에 감축) ※ 신설하는 사업의 경우 국제 표준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식(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또는 CDM 방법론 또는 ISO 14064-2)에 따름 ※ 기존 시설을 증설·개조하는 사업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름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나. 발전·에너지

(1) 바이오에너지 제조

① 활동기준		
(1) 바이오매스, (2) 바이오가스, (3)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4) 바이오 항공유, (5)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1) 바이오매스를 생산하는 경우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가? - 목재제품의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준수하는가? - BIO-SRF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7]에 따른 고품질 연료제품의 품질기준을 준수하는가? -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가? - 흑액의 경우 「흑액의 품질기준」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는가?	☐
	나. (2) 축산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등의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메탄가스 및 이산화탄소 등 소화생성물)를 생산하는 경우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0조에 따라 관리되는 시설인가?	☐
	다. (3) 바이오디젤(BD100), 바이오중유를 생산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의 [별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의 모든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라. (4) 바이오항공유를 생산하는 경우 ASTM D7566에 명시된 해당 품질기준을 준수하는가?	☐
	마. (5)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2)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공통기준 및 R-9-4 유형의 재활용 세부기준을 준수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2)의 경우 유압가스배관에 긴급차단밸브[한국산업표준(KS마크) 또는 동급기준 이상]를 설치하고, 보일러실에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목재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한국산림인증제도 또는 산림관리협의회(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 산림인증승인프로그램(PEFC; Program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지속가능 산림 이니셔티브(SFI; Sustainable Forestry Initiative), ISO22095의 임산물 생산·유통(CoC; Chain of Custody) 인증 중 하나 이상을 획득한 원료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2) 청정메탄을 제조

① 활동기준		
청정메탄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1-나-(3) 수소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는 그린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합성하여 메탄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
	나. '1-나-(1) 바이오에너지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는 바이오매스 또는 도시고형폐기물을 가스화하여 생산된 합성가스를 통해 메탄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
	다. '1-나-(1) 바이오에너지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는 바이오가스를 개질하여 생산된 합성가스를 통해 메탄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3) 수소 제조

① 활동기준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
	나. 바이오가스를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 바이오가스 중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등의 혐기성 소화를 통해 확보된 바이오가스를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의 경우 '1-나-(1) 바이오에너지 제조'의 기준을 준수 ※ 바이오가스 중 매립장의 매립가스를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의 경우 '4-라-(6)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의 기준을 준수	☐
	다. '1-나-(4) 암모니아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
	라. 청정수소인증제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았는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4) 암모니아 제조

① 활동기준		
암모니아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1-나-(3) 수소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는 수소를 활용하여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
	나.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를 회수,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5) 태양광 기반 에너지 생산

① 활동기준		
전력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수상 태양광의 경우, 「수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한 자재를 사용하여 기준에 부합하게 설치·운영하는가? (단, 해수 상부에 설치한 경우는 제외)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해당 없음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산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관리 계획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정기 조사결과를 제출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6) 태양열 기반 에너지 생산

① 활동기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태양열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해당 없음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산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관리 계획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정기 조사결과를 제출하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7) 풍력 기반 에너지 생산

① 활동기준		
전력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8) 수력 기반 에너지 생산

① 활동기준		
전력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수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해당 없음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9) 해양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① 활동기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해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10) 지열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① 활동기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지열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11) 수열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① 활동기준		
열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수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12) 바이오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① 활동기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혼소 제외)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CO ₂ eq./kWh이내에 해당하는가? (바이오가스 발전 제외)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1-바-(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1-바-(2)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수송', '1-바-(3)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저장'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CCS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도 고려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산정	☐
	나.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가 '1-나-(1) 바이오에너지 제조'의 기준을 충족하는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13) 폐기물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① 활동기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훈소 제외)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이용하는 폐기물에너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을 준수하는가? 또는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공통기준 및 R-9-5 유형의 재활용 세부기준을 준수하는가?	☐
	나.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CO ₂ eq./kWh이내에 해당하는가?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1-바-(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1-바-(2)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수송', '1-바-(3)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저장'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CCS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도 고려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산정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14) 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

① 활동기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1) 수소 (2) 암모니아 또는 (3) 수소-암모니아 혼소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다만, 상기 외의 연료를 포함하는 혼소제외)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소’ 또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는가? 또는	☐
	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수소’ 또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았는가? 또는	☐
	다.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소’ 또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를 받았는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15)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① 활동기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스를 혼합*하여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 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부생가스·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중 두 가지 이상 혼합하되,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포함한 가스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 CO₂eq./kWh 이내에 해당하는가?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1-바-(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1-바-(2)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수송’, ‘1-바-(3)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저장’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CCS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도 고려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산정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16) 폐열·냉열·감압(폐압) 기반 에너지 생산

① 활동기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1) 폐열, (2) 냉열, (3) 감압(폐압)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1)의 경우 산업공정·설비 등에서 미활용되는 폐열을 활용하는 활동인가?	☐
	나. (2)의 경우 액체산소, 액체질소, 액화천연가스 등이 기화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 중 미활용되는 냉열을 활용하는 활동인가?	☐
	다. (3)의 경우 정압관리소 등에서 압력차로 발생하는 에너지 중 미활용되는 감압(폐압)을 활용하는 활동인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17) 전기 에너지 저장·전환

① 활동기준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1)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 직접 저장, (2) 화학에너지인 수소로 전환, (3) 화학에너지인 암모니아로 전환, (4) 열에너지로 전환, (5) 양수발전을 위한 위치에너지로 전환/저장/전력계통에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1)의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았는가?	☐
	나. (2)의 경우 '1-나-(3) 수소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다. (3)의 경우 '1-나-(4) 암모니아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라. (4)의 경우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열에너지로 전환하는가? ※ 히트펌프의 경우 '1-나-(21) 히트펌프 구축·운영' 경제활동 기준 준수	☐
	마. (5)의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해당 없음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18) 열에너지 저장

① 활동기준		
열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지하 열에너지 저장시설(UTES; Underground Thermal Energy Storage), 대수층 열에너지 저장시설(ATES; Aquifer Thermal Energy Storage) 등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해당 없음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19)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저장

① 활동기준		
수소 또는 암모니아의 저장 설비(예 : 액화수소로 변환 및 저장 설비* 등)를 구축·개조·운영하는 활동 * 수소를 충전·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하는 저장탱크(수소의 품질을 균질화하기 위한 설비 포함)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20) 재생에너지 관련 송배전 인프라 구축·운영

① 활동기준		
재생에너지 관련 송배전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1-나-(5)~(13)'의 기준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 송배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
	나. 향후 5년간 신규로 활성화되는 발전용량의 2/3 이상이 '1-나-(5)~(13)'의 기준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 송배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21) 히트펌프 구축·운영

① 활동기준		
재생열원(지열·수열 등) 또는 공기열 등 저탄소 열원을 활용한 히트펌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히트펌프 시스템(EL262)을 취득하였는가? 또는	☐
	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공기-물 히트펌프,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을 취득하였는가? 또는	☐
	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1등급(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 제품인가? 또는	☐
	라. KS B 8292(물-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 KS B 8293(물-공기 지열원 열펌프 유닛), KS B 8294(물-공기 지열원 멀티형 열펌프 유닛) 기준을 충족하는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22)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청정메탄올 이송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① 활동기준		
바이오가스, 수소, 암모니아, 청정메탄올의 이송을 위한 (1)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개조·운영하거나 (2) 탱크로리 및 선박 등을 통해 이송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1)의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나. (2)의 경우 '1-다-(1) 무공해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의 기준을 충족하는 탱크로리 차량 또는 선박인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23) 폐열·냉열 공급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① 활동기준		
미활용 (1) 폐열, (2) 냉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에너지의 공급 인프라를 구축·개조·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1)의 경우 산업공정·설비 등에서 미활용되는 폐열을 활용하기 위해 관련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개조·운영하는 활동인가?	☐
	나. (2)의 경우 액체산소, 액체질소, 액화천연가스 등이 기화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 중 미활용되는 냉열을 활용하기 위해 관련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개조·운영하는 활동인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해당 없음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해당 없음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다. 수송

(1) 무공해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제조

① 활동기준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를 생산 또는 개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전거로써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및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것을 포함함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차량 중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승차정원 9명 이하),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을 준수하는가?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준수하는가? (단,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제조업자에 한함)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선박의 경우 운송에 투입될 선박이 「선박안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고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2) 무공해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도입

① 활동기준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를 도입하는 활동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전거로서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및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것을 포함함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해당 없음	☐
순환경제로의 전환	해당 없음	☐
	차량 중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승차정원 9명 이하),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을 준수하는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준수하는가? (단,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제조업자에 한함)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선박의 경우 운송에 투입될 선박이 「선박안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고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해당 없음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3)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① 활동기준		
(1) 전기충전소,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전력망 접속 개선, 수소연료공급시설, 전기고속도로, 전기철도시설 등의 저탄소 육상 인프라, (2) 육상전원공급장치(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전력망 접속 개선,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항만 하역장비, 수소연료공급시설,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설 등 저탄소 수상 인프라, (3)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와 관련된 공유 운송 인프라, (4) 보행자 전용 도로, 자전거도로 등 도보 및 자전거 인프라, (5)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상쇄의무량을 준수하기 위한 저탄소 항공 인프라, (6)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지상조업 장비, 화물환적 장비, 전기·수소 충전소 등 저탄소 공항 인프라, (7) 바이오선박유,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저탄소 연료*를 운송수단에 주입하기 위한 공급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거나 석유제품에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한다)로서 바이오연료(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재생합성연료(수소와 재생탄소를 합성하여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대체연료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라. 도시·건물

(1)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 개발·운영

① 활동기준		
(1) 신규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를 개발하거나, (2) 기존 도시를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를 개발·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도시 또는 사업 구역의 에너지자립률이 20% 이상인가? 또는 나. LEED ND 또는 LEED for Cities&Communities 인증의 Platinum 등급을 취득하였는가? (단, LEED ND의 경우 GIB CREDIT: Renewable energy production 항목에서 3점 이상, LEED for Cities Communities는 EN Credit: Renewable Energy 항목에서 4점 이상을 취득해야 함)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매뉴얼, 저영향개발 기법 시공 설계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이행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사용용도별 골재 소요량의 40% 이상)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등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도록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건축자재를 사용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2) 재생에너지 특화 지역 개발·운영

① 활동기준		
(1) 신규 재생에너지 특화 지역을 개발하거나, (2) 기존 지역을 재생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을 개발·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며, 전력 공급원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로만 구성하는가? * 재생에너지 발전, 전기저장장치(ESS), 히트펌프, 수요관리, 통합발전소 등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3)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① 활동기준		
(1) 건물 신축, (2) 기존 건물 그린리모델링, (3) 건물 취득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ZEB)(공공건축물*은 3등급 이상, 나머지 건축물은 5등급 이상), 녹색건축인증(G-SEED) 최우수등급, LEED 인증 Platinum 등급 중 하나 이상을 취득하였는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등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도록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건축자재를 사용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4)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① 활동기준		
주거용, 상업용 등 (1) 건축물 자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2) 건축물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필요한 설비,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1)의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취득하였는가? 또는 건축물의 온실가스를 직간접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에너지용도별 데이터 계측, 최적(목표) 분석·관리 등이 가능한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시스템(예 : BEMS, HEMS 등) 등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상업용전기냉장고, 창 세트,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에 한함 ※ 단, 히트펌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1-나-(21) 히트펌프 구축·운영 경제활동을 적용	☐
	나. (2)의 경우 건물 내 양방향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등을 통해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거나 전기자동차로부터 전력을 확보하여 건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해당 없음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해당 없음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5) 저탄소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① 활동기준		
데이터센터를 신규로 구축·운영하거나 기존 설비의 개조를 위해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 설비,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신축 데이터센터의 경우 그린데이터센터인증 Platinum 등급을, 기축 데이터센터의 경우 Gold 등급 이상을 취득하였는가? 또는	☐
	나.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ZEB)(공공건축물*은 3등급 이상, 나머지 건축물은 5등급 이상), 녹색건축인증(G-SEED) 최우수 등급, LEED 인증 Platinum 등급 중 1개 이상을 취득하였으며 신축 데이터센터의 경우 전력소비효율(PUE)이 1.4 미만, 기축 데이터센터의 경우 1.5 미만인가? (단, 전력소비효율(PUE)은 ISO/IEC 30134-2에 따라 측정되어야 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마. 농·축산업

(1) 저탄소 농업 · 축산업

① 활동기준		
농작물재배업* 및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술이나 방법을 적용하는 활동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취득하였는가? 또는	☐
	나.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규정」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적합하다고 판정된 사업으로서 제10조 제3항에 따른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승인서’를 발급받았는가? 또는	☐
	다.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3조에 따라 외부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는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2) 저탄소 사료 및 대체식품 제조

① 활동기준		
(1) 메탄저감제, (2) 저메탄사료, (3) 질소저감사료를 제조하거나, (4) 대체식품(세포배양식품, 식물성 대체식품, 식용곤충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1) 메탄저감제 또는 (2) 저메탄사료(메탄저감제 첨가)를 제조하는 경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 제1항 [별표 26]에 따른 메탄저감제의 기준을 충족하는가?	☐
	나. (2) 저메탄사료(메탄저감제 첨가 외)를 제조하는 경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 제7호 규정을 충족하는가?	
	다. (3) 질소저감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9조 제1항 [별표 13의4]의 성분등록 사항을 충족하는가?	
	라. (4) 대체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3) 바이오차(Biochar) 제조 및 토양 살포

① 활동기준		
바이오차* (1) 제조 및 (2) 토양 살포를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바이오차(Biochar):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열분해(탄화)하여 제조한 것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1)의 경우「비료 공정규격 설정」 제4조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제5조 (비료의 성분),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을 준수하는 바이오차를 생산하는가?	☐
	나. (2)의 경우 인정기준 가.에 따른 바이오차를 살포하는 설비로 '1-다-(1)무공해 차량·원동기 장치자전거·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제조'의 기준을 충족하는가?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① 활동기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시설(포집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국내외에서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용기나 시설에 모으는 것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운영계획을 신고하였는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2)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수송

① 활동기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수송*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이산화탄소를 국내외에서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에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을 승인받았는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3)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저장

① 활동기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포집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국내외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주입하여 대기와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고 동법 제25조에 따라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았는가? 또는	☐
	나.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업 승계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았는가?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 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4)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활용

① 인정기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기술 개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인간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여 자원으로서 산업에 이용하거나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배출가스를 직접 이용하는 것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을 받았는가? 또는	☐
	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았는가?	
③ 인정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인정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사. 임업

(1) 산림 기반 탄소흡수원 조성

① 활동기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2호 및 제2조3호에 따라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인위적인 식재, 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 등을 통해 산림에 기반한 탄소흡수원을 조성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는가? 또는	☐
	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타당성을 승인받은 외부 사업인가? 또는	
	다.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신고를 하였는가?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2) 국산목재제품 이용

① 활동기준		
국내 산림으로부터 수확된 원목 또는 이를 가공하여 생산된 목제품을 이용하는 활동 (단, 연료용으로 이용되는 목재나 제지류, 포장재 등과 같이 장기적 탄소저장 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제품 이용 및 일반적인 범용 가공설비 제외)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확인받은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가?	☐
	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탄소저장량이 측정되었는가?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2

기후변화 적응

가.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1) 기후변화 감시 및 진단

① 활동기준		
지상·해양·대기 관측망의 구축·운영 또는 이에 필요한 관측장비를 제조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기후변화 적응	활동 대상이 되는 관측망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관측망 또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관측망인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2) 기후변화 예측

① 활동기준		
(1) 과학적·통계적 기법, 수치 모델링 등을 이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활동, (2) 기후변화 시나리오 또는 실시간 기후 데이터를 이용해 기후·기후변화 예측 모델 또는 예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거나, 산업별 또는 지역별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기후변화 적응	가. (1)의 경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승인받았는가?	☐
	나. (2)의 경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승인받은 시나리오 또는 국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생산하는 시나리오, 방법론 등을 활용하였는가?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국제표준화기구(ISO), 세계기후연구 프로그램(WCRP) 등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해당 없음	☐
순환경제로의 전환	해당 없음	☐
오염 방지 및 관리	해당 없음	☐
생물다양성 보전	해당 없음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나.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평가

(1) 기후변화 영향평가

① 활동기준		
에너지 개발, 도시 개발, 수자원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도로·공항 건설 등 온실가스 다 배출 사업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적응 대책을 수립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상 명시된 평가 절차 및 평가 항목을 준수하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해당 없음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해당 없음	☐
순환경제로의 전환	해당 없음	☐
오염 방지 및 관리	해당 없음	☐
생물다양성 보전	해당 없음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2) 취약성·위험성 평가

① 활동기준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도, 민감도, 적응능력 등 주요 평가 요소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산업·부문의 기후영향과 기후 취약성, 기후리스크를 진단·측정하기 위해 (1) 모델·시스템을 개발하거나, (2) 평가 또는 통합기후위험지도 및 위험성 지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분석·평가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기후변화 적응	가. (1)의 경우, 개발하는 모델·시스템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승인받은 시나리오 또는 국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생산하는 시나리오, 방법론 등을 활용하였는가?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국제표준화기구(ISO), 세계기후연구 프로그램(WCRP) 등	☐
	나. (2)의 경우, 해당 활동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리스크 목록에 관한 평가인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해당 없음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해당 없음	☐
순환경제로의 전환	해당 없음	☐
오염 방지 및 관리	해당 없음	☐
생물다양성 보전	해당 없음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다. 기후위기 대응 역량 제고

(1) 취약한 계층·지역 보호 및 지원

① 활동기준		
(1) 기후변화로 인해 노인, 아동, 저소득계층, 야외노동자, 농·어업종사자, 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 지리적 여건으로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회복력이 낮은 계층을 건강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회복력을 강화*하거나 (2) 산업구조 전환으로 인해 고용환경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식별하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활동 * 폭염·한파·홍수 등 기후재해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대상별 맞춤형 기후적응 시설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등		☐
② 인정기준		
기후변화 적응	가. (1)의 경우 해당 활동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포함되어 있는가?	☐
	나. (2)의 경우 해당 지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해당하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2)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교육·홍보·문화·예술 활동

① 활동기준		
기업·정부·국민 대상으로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기적·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기후변화 관련 (1) 교육(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포함), (2) 홍보·문화·예술 활동(홍보·캠페인, 기후정보 제공, 공연·전시·체험·워크숍 등)		☐
② 인정기준		
기후변화 적응	가. (1)의 경우 단발성이 아닌 정례적으로 운영(연 1회 이상)되면서 3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중장기 운영계획을 보유하고 있는가? 또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받았는가?	☐
	나. (2)의 경우 활동 성과에 대한 사전·사후평가 지표(참여자수, 만족도, 인식·행동변화 등)를 가지며, 효과성을 정량적·정성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3) 기후보험 및 재보험

① 활동기준		
기후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영향 및 재난(홍수·가뭄, 폭염·한파, 태풍, 산불 등)에 따른 손실 및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및 재보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보험 상품의 설계, 상품인수, 위험평가 및 관리, 피해 보상 등의 활동(생명보험 제외) ※ 국내 기후보험 상품 제도 개발 시 관련 기준 재검토		☐
② 인정기준		
기후변화 적응	가. 보험상품 인수 및 보상 프로세스에 기후관련 위험 및 리스크 평가를 포함하는가?	☐
	나.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사전에 감소시키는 보험가입자의 적응조치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포함하는가?	☐
	다. 보험 및 재보험 사업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자사 포트폴리오 중 기후관련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상품의 비중과 관련 리스크를 보험가입자, 투자자, 감독기관 등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공개하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보험 및 재보험 상품이 화석연료의 제조, 채굴, 저장, 운송 또는 화석연료 전용 차량·선박·부동산 등과 관련이 없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해당 없음	☐
순환경제로의 전환	해당 없음	☐
오염 방지 및 관리	해당 없음	☐
생물다양성 보전	해당 없음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라.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강화

(1) 기후위험 예방·대비·대응·복구(물 부문)

① 활동기준		
기후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영향 및 재난(수온 상승, 홍수, 가뭄 등)으로 인한 수자원 인프라 및 수생태계 파괴, 수질 악화, 물순환 체계 위협 등 물 분야 물리적 피해를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설비·시설을 제조·구축·운영하는 활동		☐
※ 단, 다른 환경 목표에 중복 해당하는 경제활동의 경우, 본 환경목표가 아닌 해당 환경목표의 경제활동으로 적용		
② 인정기준		
기후변화 적응	가. 해당 활동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물관리 부문 리스크 목록 중 하나 이상의 리스크 저감을 위한 것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지방 기후변화 적응대책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에 의한 도시·군 계획 등 국가 상위계획에 따른 활동인가?	☐
	나.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분야 물리적 피해를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설비·시설 구축·운영에 필요한 제조활동의 경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또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취득하였는가? 또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취득하였는가? ※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활용되는 제품에 한하며, 사회재난 분야 제품이나 기후변화와 무관한 재난 대응 제품은 제외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2) 기후위험 예방·대비·대응·복구(산림·생태계 부문)

① 활동기준		
기후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영향 및 재난(산불, 산사태, 병충해 등)으로 인한 산림 파괴, 생태계 다양성 및 생태 기능 약화, 산림자원 손실 등의 피해를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해 산림·생태계 관리에 필요한 설비·시설을 제조·구축·운영하는 활동		☐
※ 단, 다른 환경 목표에 중복 해당하는 경제활동의 경우, 본 환경목표가 아닌 해당 환경목표의 경제활동으로 적용		
② 인정기준		
기후변화 적응	가. 해당 활동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산림·생태계 부문 리스크 목록 중 하나 이상의 리스크 저감을 위한 것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지방 기후변화 적응대책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에 의한 도시·군 계획 등 국가 상위계획에 따른 활동인가? 또한, 산림재난을 복구하는 경우 「산림 재난방지법」을 따르는가?	☐
	나.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생태계 분야 물리적 피해를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설비·시설 구축·운영에 필요한 제조활동의 경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또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취득하였는가? ※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활용되는 제품에 한하며, 사회재난 분야 제품이나 기후변화와 무관한 재난 대응 제품은 제외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3) 기후위험 예방·대비·대응·복구(국토·연안 부문)

① 활동기준		
기후변화 관련 재난(해수면 상승, 연안 침식, 풍수해, 폭염 등)으로 인한 국토 인프라 및 연안 지역의 손상, 지반 약화, 도시·주거·교통체계의 기능 저하 등 피해를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설비·시설을 제조·구축·운영하는 활동 ※ 단, 다른 환경 목표에 중복 해당하는 경제활동의 경우, 본 환경목표가 아닌 해당 환경목표의 경제활동으로 적용		☐
② 인정기준		
기후변화 적응	가. 해당 활동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국토·연안 부문 리스크 목록 중 하나 이상의 리스크 저감을 위한 것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지방 기후변화 적응대책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에 의한 도시·군 계획 등 국가 상위계획에 따른 활동인가?	☐
	나. 기후변화로 인한 국토·연안 분야의 물리적 피해를 예방·대비·대응·복구 하기 위한 설비·시설 구축·운영에 필요한 제조활동의 경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또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취득하였는가? ※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활용되는 제품에 한하며, 사회재난 분야 제품이나 기후변화와 무관한 재난 대응 제품은 제외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4) 기후피해 예방·대비·대응·복구(농수산 부문)

① 활동기준		
기후변화 관련 재난(가뭄, 폭염, 냉해, 수온 상승 등) 및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생산기반 및 생물자원의 손상, 생산량 감소, 농어촌 경제 피해 등을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농수산 기반 설비·시설을 제조·구축·운영하는 활동 ※ 단, 다른 환경 목표에 중복 해당하는 경제활동의 경우, 본 환경목표가 아닌 해당 환경목표의 경제활동으로 적용		☐
② 인정기준		
기후변화 적응	가. 해당 활동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농수산 부문 리스크 목록 중 하나 이상의 리스크 저감을 위한 것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지방 기후변화 적응대책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에 의한 도시·군 계획 등 국가 상위계획에 따른 활동인가?	☐
	나.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 분야의 물리적 피해를 예방·대비·대응·복구 하기 위한 설비·시설 구축·운영에 필요한 제조활동의 경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또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취득하였는가? ※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활용되는 제품에 한하며, 사회재난 분야 제품이나 기후변화와 무관한 재난 대응 제품은 제외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가. 물

(1) 물 공급

① 활동기준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원수를 취수 또는 정수하거나 이를 배관을 통해 급수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가. 물 공급 과정에서의 상수도관망의 유수율이 「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목표 유수율 이상인가? 또는 (단, 광역상수도 또는 공업용수도의 경우 유수율 기준 적용 제외)	☐
	나.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물 공급 취약지역에 수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활동인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물 공급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이행하는가? (단,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물 공급 취약지역에 수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해당 없음	☐
오염 방지 및 관리	해당 없음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2) 물 수요 관리

① 활동기준		
물 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1) 상수도 관망을 관리(세척,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등)하거나 (2) 절수설비·기기를 보급·설치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가. (1)의 경우 사용하는 기술 또는 제품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인증 중 1개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는가?	☐
	나. (2)의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5]에 따른 절수등급 중 최고등급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을 취득하였는가? (단, 샤워용 수도꼭지는 경제활동 적용 대상에서 제외)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3) 하수·폐수 처리 및 가축분뇨 정화

① 활동기준		
(1) 하수·분뇨, (2) 폐수, (3)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정화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단,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은 '1-나-(1) 바이오에너지 제조' 또는 '4-라-(2) 폐기물 재생이용' 경제활동을 적용)		☐
② 인정기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가. (1)을 처리하는 경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는가?	☐
	나. (2)를 배출하기 위해 처리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
	다. (2)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는가?	☐
	라. (3)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수집·운반기준을 준수하는가?	☐
	마. (3)을 정화하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는가?	☐
	바. (1), (2), (3)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정화하기 위한 설비를 제조하는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인증 중 1개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하수·분뇨, 폐수, 가축분뇨를 처리 또는 정화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이행하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4) 지하수 오염 방지 및 정화

① 활동기준		
(1)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거나, (2)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가. (1)의 경우 지하수 오염방지조치가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 또는 제26조의2에 따른 오염 방지 기준을 준수하는가?	☐
	나. (2)의 경우 지하수 정화 활동이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9조와 제34조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준수하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의 전환	해당 없음	☐
오염 방지 및 관리	해당 없음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5)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

① 활동기준		
지하시설물이나 건축물 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로 인하여 자연히 흘러나오는 유출지하수를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 및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공원용수, 청소용수, 클린로드(도로세척), 지하수열 활용, 쿨링포그, 지하수함양 등		☐
② 인정기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구축·운영 시 「지하수법 시행규칙」[별표 2의2]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해당 없음	☐
오염 방지 및 관리	해당 없음	☐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6) 물 재이용

① 활동기준		
(1) 빗물이용시설, (2) 중수도, (3)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 (4) 물 재이용수 활용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물 재이용수를 외부 공급받아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시설에 한정		☐
② 인정기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가. (1)의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는가? (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의무 설치·운영 대상이 아닌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빗물 저류조 용량기준 적용 제외)	☐
	나. (2)의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시설·관리기준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을 모두 준수하는가?	☐
	다. (3)의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설치기준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질기준을 모두 준수하는가?	☐
	라. (4)의 경우 목표 재이용률을 수립하고 이행하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해당 없음	☐
오염 방지 및 관리	해당 없음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7) 대체 수자원 활용

① 활동기준		
하천수, 지하수, 댐 용수 이외의 해수담수화, 강변여과수, 인공함양 저류지 등 대체 수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에너지회수장치 설치,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를 취하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의 전환	해당 없음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8) 비점오염저감(저영향 개발(LID) 등)

① 활동기준		
자연형 시설, 저영향 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 적용시설, 장치형 시설 등 비점오염저감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 또는 설치하는 경우 해당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3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받았는가?	☐
	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매뉴얼」의 기술기준을 준수하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해당 없음	☐
오염 방지 및 관리	해당 없음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가. 생산

(1) 재생원료·순환자원 생산

① 활동기준		
(1) 재생원료 또는 (2) 순환자원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순환경제로의 전환	가. (1)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재생원료를 생산하는가? (단,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의 경우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제6조제2항에 따라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서를 발급 받았는가?)	☐
	나. (2)의 경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인정을 받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 받은 순환자원을 생산하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2) 재생원료·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

① 활동기준		
(1) 재생원료 및 (2) 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 또는 포장재의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순환경제로의 전환	가. (1)의 경우, 제품 생산 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2]에 따른 사용 비율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하는가?	☐
	나. (2)의 경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확인서를 발급 받았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3)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

① 활동기준		
재활용이 용이한 (1) 포장재, (2) 제품의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순환경제로의 전환	가. (1)의 경우 환경부 고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에 따른 판정등급 중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가?	☐
	나. (2)의 경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이 없거나 개선권고를 이행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는가? 또는 자원순환성 향상(재활용성 향상)을 인증 사유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을 취득하였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나. 소비

(1) 다회용기 활용

① 활동기준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순환경제로의 전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다회용기 대여 서비스(EL806))을 취득하였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해당 없음	☐
생물다양성 보전	해당 없음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2) 되채우기 매장(리필스테이션) 구축·운영

① 활동기준		
불필요한 포장재 소비를 줄이기 위해 내용물만 판매하는 리필스테이션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순환경제로의 전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 매장인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해당 없음	☐
오염 방지 및 관리	해당 없음	☐
생물다양성 보전	해당 없음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다. 관리

(1) 폐기물 수거·회수·선별·분리

① 활동기준		
폐기물의 (1) 수거·회수 또는 (2) 선별·분리를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단, 매립 또는 소각만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제외		☐
② 인정기준		
순환경제로의 전환	가. (1)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였는가?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직접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인가?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인가? 또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의 허가를 받았는가?	☐
	나. (2)의 경우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
	(1)에서 차량을 도입하는 경우 ‘저감장치 부착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를 취했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2) 사용 후 제품의 오염 제거 및 해체

① 활동기준		
자원 회수 또는 부품 재사용을 위해 사용 수명이 다한 (1) 폐전기·전자제품 (2) 폐자동차 또는 (3) 폐선박에서 오염물을 제거하거나 이를 해체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순환경제로의 전환	가. (1)의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의 기준을 준수하는가?	☐
	나. (2)의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의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 기준을 준수하는가?	☐
	다. (3)의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의 기준을 준수하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라. 재생

(1) 폐기물 재사용

① 활동기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사용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순환경제로의 전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공통기준 및 재활용 유형 R-1 또는 R-2 유형 중 해당하는 재활용 유형의 세부기준을 준수하는가? 또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에 따른 재활용 유형 중 FR-1 또는 FR-2 유형에 해당하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2) 폐기물 재생이용

① 활동기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이용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단,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강·시멘트·유기화학물질 제조의 경우 적용 제외)		☐
② 인정기준		
순환경제로의 전환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공통기준 및 재활용 유형 R-3, R-4, R-5, R-6, R-10 유형에 해당하는 재활용 유형의 세부기준을 준수하는가? 또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에 따른 재활용 유형 중 FR-3, FR-4, FR-6 유형에 해당하는가?	☐
	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인 경우(R-11-2유형만 해당) 재활용 승인을 취득하였는가? 또는	☐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을 취득하였는가? 또는	☐
	라. 자원순환성 향상(유효자원 재활용)을 인증 사유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을 취득하였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3) 폐기물 재제조

① 활동기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재제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순환경제로의 전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을 취득하였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4) 폐기물 화학적 재활용

① 활동기준		
폐기물을 열분해, 해중합, 용매추출, 가스화 방식을 통해 (1) 원료 또는 (2) 연료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순환경제로의 전환	가. (1)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공통기준 및 재활용 유형 R-3-3 또는 R-3-4 유형에 해당하는 재활용 유형의 세부기준을 준수하는가?	☐
	나. (2)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공통기준 및 R-9-3 유형의 재활용 세부기준을 준수하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5) 폐기물 에너지회수

① 활동기준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인 (1)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2)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3) 가연성 폐기물로 고형연료제품(SRF)을 만드는 활동, (4) 정제, 유화 등의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으로 정제연료유나 재생연료유 등 유류를 만드는 활동(폐유 정제유 등)을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순환경제로의 전환	가. (1)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공통기준 및 R-8-1 유형의 재활용 세부기준을 준수하는가?	☐
	나. (2)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공통기준 및 R-8-2 유형의 재활용 세부기준 및 제3조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을 준수하는가?	☐
	다. (3)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을 준수하는가?	☐
	라. (4)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공통기준 및 R-9-2 유형의 재활용 세부기준을 준수하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6)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① 활동기준		
매립장의 매립가스를 연료, 원료 등으로 포집 및 처리·활용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순환경제로의 전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공통기준 및 R-9-4 유형의 재활용 세부기준을 준수하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5

오염 방지 및 관리

가.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1)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① 활동기준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입자상물질,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환경보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1) 사전 예방·저감, 처리, (2) 측정·감시하기 위한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오염 방지 및 관리	가. (1)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사업장·자동차·선박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거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그리고	☐
	나. (1)의 경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대상 사업장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할당 등의 기준을 준수하는가?	☐
	다. (1)의 경우 중, 대기 중의 비산배출시설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3 및 제58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는가?	☐
	라. (2)의 경우 해당 기기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1등급을 취득하였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2) 악취 방지 및 저감

① 활동기준		
악취 방지 또는 저감을 위한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오염 방지 및 관리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3) 실내공기질 관리 및 정화

① 활동기준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1) 제거·저감 및 처리, (2) 측정·감시하기 위한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오염 방지 및 관리	가. (1)의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준수하는가?	☐
	나. (2)의 경우 해당 기기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1등급을 취득하였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해당 없음	☐
순환경제로의 전환	해당 없음	☐
생물다양성 보전	해당 없음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나.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1)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① 활동기준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물질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등의 (1) 배출방지, (2) 배출된 오염물의 확산방지·제거, (3) 수거·처리(정화)를 위한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오염 방지 및 관리	가. (1)의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25조, 제26조, 제27조에 따라 폐기물·기름·유해액체물질 오염방지 설비를 설치하는가?	☐
	나. (2)의 경우 방제조치, 자재 및 약제의 비치, 방제선 등의 배치 등 오염물질 해양 배출에 대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제66조, 제67조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가?	☐
	다. (3)의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 또는 「어장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하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다. 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

(1) 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

① 활동기준		
(1) 토양오염 방지 또는 (2) 오염된 토양 정화 또는 (3) 정화토를 활용하기 위한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단, 성토·복토 등 되메우기를 목적으로 정화토를 활용하는 활동은 제외)		☐
② 인정기준		
오염 방지 및 관리	가. (1)의 경우 토양오염방지시설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의2]에 따른 설치·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는가?(동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별표1]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 기준 준수)	☐
	나. (2)의 경우 토양정화 활동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준수하는가?	☐
	다. (3)의 경우 토양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지 지목에 적용되는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맞춰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 및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이 완료된 토양을 활용하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해당 없음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 (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가. 생물다양성

(1)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보전·복원

① 활동기준		
(1)육상생태계 및 보호지역, (2)해양생태계 및 보호지역의 보호·보전·복원을 위한 활동 (단, 육상 및 해양생태계를 훼손시킨 후 보호·복원·보전하는 경우는 제외)		☐
② 인정기준		
생물다양성 보전	가. (1)의 경우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지침의 자연환경복원사업 목표 유형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보호·보전·복원 사업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6에 따른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대상인 경우 타당성을 인정받고, 같은 법 제42조의7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
	나. (2)의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호·보전·복원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사업계획 또는 이에 준하는 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또는 갯벌복원사업 지침 제5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갯벌복원사업 사업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2) 생물종 보호·보전·복원

① 활동기준		
(1) 야생생물을 보호·보전·복원하거나, (2)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의 유입 방지 등 관리를 위한 활동 (단, (1)의 경우 중 (2)에 해당하는 생물종의 보호·보전·복원 활동은 제외)		☐
② 인정기준		
생물다양성 보전	가. (1)의 경우 보호종 관련 법률* 또는 생물종 보호·보전·복원 지침**의 보호·보전·복원 절차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또는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 멸종위기 야생생물 표준 복원 가이드라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류군별 복원 가이드라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지침서, 생태보전실무지침서 등	☐
	나. (1)의 경우 중 야생생물의 서식지외 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되었는가? 또는 조난·부상당한 야생생물의 구조 및 치료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조에 따른 야생생물 치료기관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는가?	☐
	다. (2)의 경우 생태계 교란 우려 생물의 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3) 도시 내 생태공간 조성

① 활동기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도시 내 생태공간을 조성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생물다양성 보전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해당 없음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4) 지속가능한 산림 유지·관리

① 활동기준		
산림을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생물다양성 보전	한국산림인증제도 또는, 산림관리협의회(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또는, 산림인증승인 프로그램(PEFC; Program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의 산림경영(FM: Forest Management) 인증을 취득하였는가? ※ 연계관리인증(CoC) 등 임산물 이용 관련 인증은 제외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제2절

전환부문

1

온실가스 감축

가. 산업

(1)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① 활동기준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연료전환, 에너지 절감, 자원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관련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9. 녹색분류체계 관련 온실가스 감축설비 대상 목록’에 해당하는 활동인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나. 발전·에너지

(1)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① 활동기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또는 혼합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부생가스·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중 두 가지 이상 혼합한 가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기술개발(무탄소 혼소, CCS 등) 수준 등을 감안하여 2030~2035년까지 공사계획을 인가받은 설비에 대해 인정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 CO ₂ eq./kWh 이내(발전량, 설계 명세서 기준)에 해당하는가?	☐
	나. 설계 수명 기간(design lifetime) 동안 평균 250g CO₂eq./kWh을 달성할 수 있는 중장기 감축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가?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1-바-(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1-바-(2)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수송’, ‘1-바-(3)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저장’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CCS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도 고려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산정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2)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신규건설)

① 활동기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원자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2045년까지 건설 허가를 받은 설비에 대해 인정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 계획이 존재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 및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가?	☐
	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는가?	☐
	다.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ATF)를 적용하는가? *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및 고시」 내 최신 기술 기준을 모두 준수	☐
	라.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 CO ₂ eq./kWh 이내에 해당하는가?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산정	☐
	마.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을 보유*하는가? *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발전소 영구 정지 시점까지 필요한 비용 확보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해양 또는 담수에 대한 온배수 영향을 관리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원자력 안전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였는가? ※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3)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계속운전)

① 활동기준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어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개조하는 활동 ※ 2045년까지 계속운전을 허가받은 설비에 대해 인정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 계획이 존재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 및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가?	☐
	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	☐
	다. 2031년 1월 1일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ATF)를 적용하는가?	☐
	라.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 CO ₂ eq./kWh 이내에 해당하는가?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산정	☐
	마.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을 보유*하는가? *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발전소 영구 정지 시점까지 필요한 비용 확보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해양 또는 담수에 대한 온배수 영향을 관리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원자력 안전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였는가? ※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4)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수소(블루수소) 제조

① 활동기준		
액화천연가스(LNG) 기반으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액화천연가스(LNG) 기반의 개질 수소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이상 감축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1-바-(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1-바-(2)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수송', '1-바-(3)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저장'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CCS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도 고려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산정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다. 수송

(1)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친환경 선박 기자재 제조

① 활동기준		
(1) 친환경 선박의 건조, 개조, 유지관리 또는 (2) 친환경 선박 기자재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1)의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선박인증 3등급 이상을 취득하였는가?	☐
	나. (2)의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선박 기자재 인증을 취득하였는가? ※ 단,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분류 상 온실가스 저감 기술, 선박에너지효율향상기술에 해당하는 기자재에 한함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운송에 투입될 선박이 「선박안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고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2) 친환경 선박 도입

① 활동기준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는 활동 ※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선박인증 3등급 이상을 취득하였는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해당 없음	☐
순환경제로의 전환	해당 없음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운송에 투입될 선박이 「선박안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고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해당 없음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

- 사업의 주체는 경제활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경개선 목적 달성의 긍정적인 영향보다 해당 경제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크지 않은지 고려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해당 경제활동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Scope 1)과 구매 전력·열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Scope 2)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확인하거나 평가하며, 평가 기준과 산정 방법은 문서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이때, 직접 측정이 가능한 경우 실제 배출량 및 감축량 데이터를 기록하고,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인된 배출계수 등 신뢰 가능한 산정 방법 등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 다만, 이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검토가 용이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해당 경제활동의 주요 목적이 환경개선이라고 할지라도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활동 수행 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해당 경제활동은 석탄 등 화석연료 자체의 신규 채굴, 제조, 저장, 운송을 직접 목적으로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 다만, 석유 기반 연료나 원료를 친환경 연료와 혼합 사용하거나 CCUS 등과 연계 할 경우에는 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해당 경제활동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해당국의 법적 기준과 규제를 우선 적용하되, 해당 기준이 국내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부재할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환경기준이나 권고 지침, 국제표준 등을 따라야 한다.

- 사업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영향(해수면 상승, 온난화 등) 및 이상기후 현상(폭우, 가뭄, 폭염, 한파 등)의 물리적 위험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후 영향의 예측 및 평가를 통해 적절한 예방·대비, 저감, 대응 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해당 경제활동 수행의 전 기간 동안 아래 표의 분야별 기후리스크에 해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경제활동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리스크인지 자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자체 평가시 가능할 경우, 최신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 받은 시나리오 또는 국제 공신력이 있는 기관(IPCC, ISO 등)에서 생산하는 시나리오, 방법론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 기후위험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한 해당 기후리스크를 줄이는 대응 방안을 수립·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한다.
-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환경목표(기후변화 적응 목표는 제외)의 18대 분야 중
1. 산업, 발전·에너지 분야 경제활동은 ③국토·연안 부문 13가지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2. 수송 분야 경제활동은 ③국토·연안 부문 13가지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3. 도시·건물 분야 경제활동은 ①물관리(9개), ③국토·연안(13개) 부문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4. 농·축산업 분야 경제활동은 ①물관리(9개), ②산림·생태계(18개), ④농수산(14개) 부문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5.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분야 경제활동은 ③국토·연안 부문 13가지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6. 임업 분야 경제활동은 ②산림·생태계 부문 18가지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7.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목표 경제활동은 ①물관리(9개), ②산림·생태계(18개), ③국토·연안(13개) 부문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8. 순환경제로의 전환 목표 경제활동은 ③국토·연안 부문 13가지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9. 오염 방지 및 관리 목표 경제활동은 ③국토·연안 부문 13가지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10.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경제활동은 ①물관리(9개), ②산림·생태계(18개), ④농수산(14개) 부문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11. 연구개발, ICT 분야 경제활동은 ①물관리(9개), ②산림·생태계(18개), ③국토·연안(13개), ④농수산(14개) 부문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 해당 경제활동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UNFCCC, IPCC 등 국제기구의 기후적응 지침 또는 현지 국가의 적응전략과 정합되는 방식으로 리스크 식별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국가 기후리스크 목록(5대 부문 65개 리스크) 중 일부(건강 부문은 제외)〉¹⁾

① 물관리 부문(9개)		해당 여부
홍수	폭우로 인한 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증가	(예시) ×
	강우량 변동성 증가로 인한 댐과 하천의 기반시설 안전성 저하	(예시) ×
가뭄	기후변화로 인한 물공급(생활/공업/농업용수) 능력 저하	(예시) ×
	가뭄으로 인한 지하수 함양량 감소	(예시) ×
	가뭄으로 인한 하천의 건천화 심화	(예시) ×
	기후변화로 인한 상하수도 시설 운영능력 저하	(예시) ×
수질·생태계	기온 상승과 가뭄으로 인한 하천/호소 수질 악화	(예시) ○
	폭우로 인한 하천/호소로의 오염물질 유입 증가	(예시) ○
	기온 상승, 가뭄, 폭우, 태풍으로 인한 수생생물 건강성 훼손	(예시) ○
② 산림·생태계 부문(18개)		해당 여부
생물종	기후변화로 인한 식물(종, 개체수, 군락, 식물계절, 분포) 서식지 변화	(예시) ×
	기후변화로 인한 야생동물의 종, 개체수 및 서식지 변화	(예시) ×
	기후변화로 인한 외래생물 증가	(예시) ×
	기후변화로 인한 멸종위기종 및 희귀/보호종 감소	(예시) ×
	극한기상으로 인한 생물종 및 개체수 변화	(예시) ×
생물서식지	기후변화로 인한 아고산대(종, 생육, 분포) 서식지 변화	(예시) ×
	기후변화로 인한 담수 생물의 개체수 및 서식지 변화	(예시) ○
	극한기상에 의한 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 변화	(예시) ○
	기후변화로 인한 토양 생태계 변화	(예시) ○
	기후변화 및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도서 생태계 변화	(예시) ○
	기후변화로 인한 습지 생태계 변화	(예시) ×
	극한기상으로 인한 연안 및 하구역, 해양생태계 변화	(예시) ×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조간대 및 하구생태계 변화	(예시) ×
산림	극한 기상으로 인한 산림재해(산불, 산사태 등) 발생 및 피해 증가	(예시) ×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의 성장과 탄소 흡수량 변화	(예시) ×
	기후변화로 인한 임산물 피해	(예시) ×
	폭우 및 가뭄으로 인한 산림 계류수의 변화	(예시) ○
	극한기상으로 인한 산림병해충 피해 증가	(예시) ○

③ 국토·연안 부문(13개)		해당 여부
정주공간	폭우로 인한 도심지 주택 또는 저지대 침수 피해 증가	(예시) ×
	폭우, 태풍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위험성 증가	(예시) ×
	극한기상으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 증가	(예시) ×
	극한기상으로 인한 노후 건축물 파손 증가	(예시) ×
	극한기상으로 인한 쇠퇴도시 및 기반시설 노후도시 등 취약지역 피해 증가	(예시) ×
기반시설	극한기상으로 인한 육상교통(철도, 도로) 시설 파손 및 성능 저하	(예시) ×
	극한기상으로 인한 전기/통신시설 파손 및 성능 저하	(예시) ○
	극한기상으로 인한 그린인프라 피해위험 증가	(예시) ○
연안	폭우, 해일, 파랑, 해수면상승으로 연안지역 침수 및 범람 위험 증가	(예시) ○
	파랑 및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백사장, 사구, 갯벌 침식 및 식생 피해 위험 증가	(예시) ○
	극한기상으로 인한 항만시설, 공항시설의 파손 및 운영 정지, 사고위험 증가	(예시) ×
	태풍, 해일, 강풍, 파랑,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연안 시설물 파손, 기능저하 및 사고위험 증가	(예시) ×
	해수면상승에 따른 염수 침투 및 해안선 후퇴에 따른 연안지역 피해 증가	(예시) ×
④ 농수산 부문(14개)		해당 여부
식량자원	극한기상으로 인한 작물 생산성 변동 및 품질저하	(예시) ×
	기후변화(기온 상승, 강수량 변화 등)로 인한 작물 재배적지, 작부체계 변화	(예시) ×
	폭염 및 기온상승으로 인한 가축생산성 저하	(예시) ×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업 피해 및 양식환경 변화	(예시) ×
	해수온 상승 및 해양산성화로 인한 어업 생산성 저하	(예시) ×
생산환경 기반	극한기상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 피해 증가	(예시) ×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발생 및 잡초 증가로 농작물 피해 증가	(예시) ×
	해수온 상승 및 한파, 폭염 등으로 인한 가축, 수산질병 증가 및 안전성 저하	(예시) ×
	폭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및 토양유실, 농업용수 수질오염	(예시) ○
	가뭄 및 기온 상승으로 인한 농업 수리시설의 수자원공급 안정성 저하	(예시) ○
	폭우 강도 및 빈도 증가로 인한 농업수리시설 홍수 대응력 저하	(예시) ×
	해양 기상환경변화로 인한 조업환경 변화 및 조업 일수 감소	(예시) ○
	기후변화로 인한 수입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성 저하	(예시) ×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물가의 불확실성 증가	(예시)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사업의 주체는 해당 경제활동에 따라 수자원 및 해양자원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물관리 기본법」에서 정의한 기본원칙인 물의 공공성, 건전한 물순환, 수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해 아래의 항목들을 고려해야 한다.
 - 지표수, 지하수, 샘물 등의 좋은 수질 및 수량을 유지하고 수생태계 건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 수행 시 관련 수질, 수량, 수생태계 등에 리스크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 경제활동 수행 과정에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수계 특성, 유역 구분, 방류수역 등에 따라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한다.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으로,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과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이 있다.

- 「하수도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낙동강수계·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상수원관리지역에서 금지한 행위** 및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에서 금지한 행위**,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단, 해당 지역에서 금지행위의 허가 및 신고 시 또는 공장 설치 승인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을 모두 준수한다.

상수원관리지역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 있다.

상수원관리지역에서 금지한 행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 등

지하수보전구역에서 금지한 행위

지하수의 수위 저하, 수질오염 또는 지반 침하 등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터널공사 등 지하수의 유동로 및 유동속도를 변경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굴착공사, 지하유류저장고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설치, 폐기물 매립장과 특정 폐기물 보관시설 및 집단묘지 등의 설치, 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채광, 토석 채취 및 가축 등의 사육),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행위, 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토양 오염물질을 배출 제조 또는 저장하는 시설 행위 등 제한

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가축의 사체 매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유발시설의 설치

- 단, 해당 경제활동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환경성평가**를 수행하여 수자원과 해양자원과 관련한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관련 리스크가 관리되어 기본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사업은 기본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 해당 경제활동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해당국의 법적 기준과 규제를 우선 적용하되, 해당 기준이 국내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부재할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환경기준이나 권고 지침, 국제표준 등을 따라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가축분뇨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해당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참고한다.

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도시의 개발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산지의 개발사업,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사업, 가축분뇨 자원화 또는 정화시설, 공공처리 시설 등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참고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등이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를 참고한다.

지하수영향조사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조사로서 「지하수법」 제7조 제2항, 제8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항, [별표 2]를 준수해야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해양이용·개발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및 평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해양이용·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를 참고한다.

환경성평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 사업의 주체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제품이나 소재·부품·장비 등을 생산·유통·사용·소비하는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구성 제고 및 재활용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소재·장비·부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기술적·산업적 특성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정 단계에서 폐기보다는 재활용을 우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경제활동별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하며, 관련 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순환경제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한다.
 - ※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등
- 해당 경제활동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해당국의 법적 기준과 규제를 우선 적용하되, 해당 기준이 국내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부재할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환경기준이나 권고 지침, 국제표준 등을 따라야 한다.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

- 사업의 주체는 화학물질, 대기오염,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 예방, 대기환경의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보전,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관리, 해양오염물질의 배출 규제 등을 통한 해양오염의 예방 등과 관련하여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 해당 경제활동이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에 해당 시 **잔류성오염물질**의 환경 기준, 배출허용기준 준수 가능 여부

배출시설

제철 및 제강시설,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시설,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시멘트 제조시설,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시설, 소각시설을 포함하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을 참고한다.

잔류성오염물질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하는 물질로 환경 기준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3, 배출허용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3을 참고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중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가능 여부

유발물질

지구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 물질로 온실가스 및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목록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별표2를 참고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및 환경부 고시에 따른 특정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제조, 운반, 사용 등 해당 여부

제한물질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금지물질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물질**(제1종: 오존층 파괴물질 / 제2종: 수소불화탄소(HFCs)) **배출** 여부

특정물질 배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에 관한 법률(이하 '오존층보호법')」 제2조 제1호의 '특정물질', 즉,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인 제1종 특정물질(오존층보호법 제2조 제1호 제가목,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및 수소불화탄소(HFCs)(오존층보호법 제2조 제1호 제나목,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2])를 배출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특정물질 및 수소불화탄소(HFCs)를 배출하게 될 경우, 오존층보호법 제4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경우에도 「특정물질(H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등 공고」 II. 기준수량 및 III. 기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유해물질 사용억제의 사업자의 책무, 제9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함유기준** 준수 여부

사용제한 대상 및 함유기준

자동차의 경우 납, 수은, 육가크롬, 카드뮴 기준 준수,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납, 수은, 육가크롬,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카드뮴에 대한 기준 준수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토양오염물질**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

토양오염물질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토양오염우려기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물질별 오염 기준을 말한다.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의** 해양 배출금지 등 준수 가능 여부

오염물질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기름·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을 말한다.

- 해당 경제활동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해당국의 법적 기준과 규제를 우선 적용하되, 해당 기준이 국내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부재할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환경기준이나 권고 지침, 국제표준 등을 따라야 한다.

- 사업의 주체는 해당 경제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므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각호의 지역에 해당하는지 고려하고 해당 지역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3.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6.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지역
 -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생물다양성의 증진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 다.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7.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8. 「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
9.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10.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
1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 해당 경제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해양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므로 경제활동이 하고자 하는 지역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지 고려하고 해당 지역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2. 해양의 지형·지질·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4.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에 해당하는 해역
5. 산호초·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6.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7.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아래 해역 중 연안 또는 해상에 해당하는 구역
 - △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 △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해상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 △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 및 그 보호구역(해상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해상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 해당 경제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므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지 고려하고 해당 지역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우리나라 갯벌을 대표할 만한 경관이나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경우
2. 갯벌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주요 서식처인 경우
4.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5. 갯벌생태계의 보호와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6. 생물자원의 생산증대 조치가 필요한 경우

- 해당 경제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므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고려하고 해당 지역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단, 해당 경제활동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환경성평가** 대상으로 지자체, 환경청 등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사업은 기본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가축분뇨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해당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참고한다.

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도시의 개발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산지의 개발사업,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사업, 가축분뇨 자원화 또는 정화시설, 공공처리 시설 등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참고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등이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를 참고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해양이용·개발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및 평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해양이용·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를 참고한다.

환경성평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 환경영향평가 등의 결과 협의 내용 또는 조건부 협의 결과는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조치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 해당 경제활동이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 시 사업 착수 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
- 해당 경제활동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해당국의 법적 기준과 규제를 우선 적용하되, 해당 기준이 국내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부재할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환경기준이나 권고지침, 국제표준 등을 따라야 한다.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2025년도 기준)			비고
6대 환경목표	품목명	품목코드	
1. 온실가스 감축(55)	자율제조·스마트팩토리 솔루션	A01003	사용 목적이 녹색경제활동 활동기준에 해당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함
	지능형기계	A01006	사용 목적이 녹색경제활동 활동기준에 해당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함
	드론(무인기)	A03001	사용 목적이 녹색경제활동 활동기준에 해당하며 무공해(전기, 수소, 태양광) 동력원인 경우에 한함
	항공기	A03002	‘1-다(1) 무공해 항공기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AAM/UAM(항공 모빌리티)	A03006	‘1-다(1) 무공해 항공기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첨단 철도시스템	A04001	‘1-다(1) 무공해 철도차량 제조, ‘1-다(3)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 운영’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전기·하이브리드차	A04002	‘1-다(1) 무공해 차량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자율주행차	A04003	‘1-다(1) 무공해 차량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서비스	A04004	‘1-다(3)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 운영’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퍼스널모빌리티 인프라/서비스	A04005	‘1-다(3)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 운영’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수소전기차	A04006	‘1-다(1) 무공해 차량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고효율·친환경 선박	A05002	‘1-다(1) 무공해 선박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자율운항선박	A05003	‘1-다(1) 무공해 선박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압전·열전소자	B06003	사용 목적이 녹색경제활동 활동기준에 해당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함
	초전도체	B06004	사용 목적이 녹색경제활동 활동기준에 해당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함
	차세대 전자소자	B07002	사용 목적이 녹색경제활동 활동기준에 해당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함
	스마트조명	B07003	
	태양광발전	C08001	‘1-나-(5)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바이오매스 에너지	C08002	‘1-나-(1) 바이오에너지 제조’, ‘1-나-(12) 바이오에너지 발전’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재생열에너지	C08003	‘1-나-(6) 태양열, 1-나-(9) 해양에너지, 1-나-(10) 지열 에너지, 1-나-(11) 수열에너지, 1-나-(12) 바이오 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해양에너지	C08004	
	풍력발전	C08005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C08006	신재생에너지 간 융합만 포함

차세대원자로·SMR	C09002	
원전플랜트 해체	C09003	
방사성폐기물 처리	C09004	
핵융합에너지	C09006	
에너지저장장치(ESS)	C10001	'1-나-(17) 전기 에너지의 저장·전환'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슈퍼커패시터	C10002	사용 목적이 녹색경제활동 활동기준에 해당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함
초임계CO ₂ 발전시스템	C11001	사용 목적이 녹색경제활동 활동기준에 해당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함
가스터빈 발전	C11002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해당 경제활동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에너지 가스변환	C11003	'1-나-(17) 전기 에너지의 저장·전환'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무탄소 가스발전	C11004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해당 경제활동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폐열회수	C11006	'1-나-(16) 폐열 기반 에너지 생산'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에너지 하베스팅	C11007	사용 목적이 녹색경제활동 활동기준에 해당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함
스마트그리드	C11009	사용 목적이 녹색경제활동 활동기준에 해당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함
분산에너지 시스템	C11010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해당 경제활동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동적송전용량 측정기술	C11012	사용 목적이 녹색경제활동 활동기준에 해당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함
스마트 직류배전	C11013	
초고압직류 송배전	C11014	
가정용에너지 관리	C11015	
제로에너지빌딩	C11016	'1-라-(3) 제로에너지 건축물 신규건설, 리모델링 및 취득', '1-라-(4)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히트펌프	C11017	'1-나-(21) 히트펌프 구축·운영'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리튬이온배터리	C12001	'1-나-(17) 전기 에너지의 저장·전환'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차세대 이차전지	C12002	사용 목적이 녹색경제활동 활동기준에 해당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함
배터리에너지 관리체계	C12003	사용 목적이 녹색경제활동 활동기준에 해당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함
수소에너지	C13001	'1-나-(3) 수소 제조', '1-나-(14) 수소 기반 에너지 생산', '1-나-(19)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저장'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연료전지 발전	C13002	'1-나-(14) 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친환경 냉매	D14005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D14006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해당 경제활동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친환경 연료	D14010	E-Fuel만 포함
	수직농법	D16001	'1-마-(1) 저탄소 농업'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스마트 농업	D16002	'1-마-(1) 저탄소 농업'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곤충사육	D17001	
	대체식품	D18003	'1-마-(2) 저탄소 사료 및 대체 식품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3.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4)	기능성 분리막	B06017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목표 해당 경제활동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수질오염관리	D14003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목표 해당 경제활동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스마트 상하수도	D14009	
	담수화	D15002	'3-다-(7) 대체 수자원 활용'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4. 순환경제로의 전환(10)	친환경섬유	B06020	친환경 소재만 포함(생분해성 섬유 제외)
	고온환원처리시스템	C11008	'4-라-(4) 폐기물의 화학적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이차전지 재사용·재자원화	C12005	'4-라-(1) 폐기물 재사용', '4-라-(2) 폐기물 재생이용'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금속자원 재자원화	D15001	'4-라-(2) 폐기물 재생이용'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모듈러 건축	D15003	자재의 재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건축형태만 포함
	신재생발전시스템 재자원화	D15004	'4-라-(1) 폐기물 재사용', '4-라-(2) 폐기물 재생이용'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재제조	D15006	'4-라-(3) 폐기물 재제조'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전자폐기물 업사이클링	D15007	'4-라-(1) 폐기물 재사용', '4-라-(2) 폐기물 재생이용'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폐자원에너지	D15008	'1-나-(13) 폐기물에너지 발전, 4-라-(4) 폐기물의 화학적 재활용, 4-라-(5) 폐기물 에너지회수, 4-라-(6)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D15009	'4-라-(1) 폐기물 재사용', '4-라-(2) 폐기물 재생이용', '4-라-(4) 폐기물의 화학적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5. 오염 방지 및 관리(4)	지능형 공조시스템	C11011	사용 목적이 녹색경제활동 활동기준에 해당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함
	대기오염관리	D14001	장비 및 시설의 경우 '5-가-(1)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5-가-(2) 악취 방지 및 저감'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실내공기질 관리	D14004	장비 및 시설의 경우 '5-가-(3)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토양정화	D14007	장비 및 시설의 경우 '5-다-(1) 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6대 환경목표에 따라 임의로 분류한 참고용이며, 사용자가 타 환경목표에 우선적으로 기여한다고 판단할 경우 변경 가능함			

붙임8

녹색분류체계 관련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17대 분야 및 구분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명	비고
태양광		초고효율 태양전지	
		사용처 다변형 태양광시스템	‘1-나-(5) 태양광 기반 에너지 생산’의 기준을 준수하는 소부장 제조활동만 포함
풍력		초대형 풍력 터빈	
		해상풍력 부유체 시스템	
		수직축 부유식 풍력발전	‘1-나-(7) 풍력 기반 에너지 생산’의 기준을 준수하는 소부장 제조활동만 포함
		해상풍력발전 운영·관리	‘1-나-(7) 풍력 기반 에너지 생산’의 기준을 준수하는 소부장 제조활동만 포함
		해상풍력 설치·시공	‘1-나-(7) 풍력 기반 에너지 생산’의 기준을 준수하는 소부장 제조활동만 포함
수소	수전해 수소	알칼라인 수전해	‘1-나-(3) 수소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PEM 수전해	
		차세대 수전해	
	수소 저장·운송	기체수소 저장·운송	‘1-나-(22)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청정메탄을 이송 인프라 구축·개조·운영’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액체수소 운송선	
		액체수소 저장·운송	
		수소 전용 배관망	
	해외수소 저장·운송	해외 암모니아·수소 대용량 저장·운송	
		차세대 해외수소 저장·운송	
		액체수소 인수기지	
무탄소전력	수소 전소	수소전소 가스터빈	‘1-나-(14) 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고효율 연료전지 열병합	
		초고효율 연료전지 복합발전	
에너지통합		산업용 고온·초저온 히트펌프	‘1-나-(21) 히트펌프 구축운영’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복합에너지시스템	‘1-나-(17) 전기 에너지 저장·전환’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열에너지 저장시스템	‘1-나-(18) 열에너지 저장’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전력저장		단주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	‘1-나-(17) 전기 에너지 저장·전환’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장주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	

17대 분야 및 구분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명	비고
전력망		지능형 송배전 시스템	
		실시간 전력거래 플랫폼	
		분산자원 및 유연자원 통합운영	
철강	수소환원제철	수소환원제철	
	하공정	철강산업 하공정 무탄소 연료 전소	
석유화학	연료대체	전기 가열로 NCC 시스템	
		무탄소 연료 NCC 공정	무탄소 연료 혼소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한함
	원료대체	바이오 PEF	
		바이오폴리올	
		바이오나프타·올레핀	
	친환경 신공정	스마트 플랜트 전환	
시멘트	원료대체	혼합재 함량 증대	혼합재 혼합비율이 KS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비탄산염 원료 대체	비탄산염 혼합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 한함
		신규 혼합재 제조	
산업일반		친환경 냉매	
		공정가스 대체	
		산업공정용 수소·암모니아 활용	수소·암모니아 전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탄소배출 저감 효과 모니터링	
		그린데이터센터	‘1-라-(4) 저탄소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CCUS	탄소 포집	분리막 포집	‘1-바-(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습식 포집	
		건식 포집	
		차세대 포집	
	탄소 저장	저장소 탐사·평가·선정	‘1-바-(3)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저장’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저장 시설·설비 설계·구축	
		저장소 CO2 주입·운영	
		CO2 저장 모니터링	
	탄소 활용	화학적 전환	‘1-바-(4)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활용’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광물 탄산화	
		생물학적 전환	

17대 분야 및 구분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명	비고
친환경차	전기차용 이차전지	이차전지 셀 고도화	하이브리드 차량용은 제외
		이차전지 시스템 고도화	
	전기 구동 시스템	전기구동시스템 성능 향상	
		전력변환장치 고도화	
	전기차용 전기충전	유선충전 고속화	
		무선충전 대용량화	
	수소차용 연료전지	연료전지 시스템 고도화	하이브리드 차량용은 제외
	수소차용 저장·충전	수소차용 수소저장시스템	
		수소충전소	
선박	탄소중립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선박용은 제외	
	선박용 연료전지·배터리 시스템		
	선박 전기추진 시스템		
제로에너지건물	고성능·다기능 외피	‘1-라-(3)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또는 ‘1-라-(4) 건축물 관련 온실 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건물·설비 전기화·고효율화		
	건물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융합시스템		
	건물에너지 관리·제어·데이터 활용		
환경	국토공간 유형별 탄소 흡수 증진·관리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부록 1] 지원설비 목록 중 1.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2025년도 사업 기준) 및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2025.2.3. 기준)을 기반으로 작성된 아래 대상설비 및 범위에 해당할 것
- 9.~11.에 해당하는 설비의 경우,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에너지절감효과를 인정하는 시험성적서(최근 3년 이내) 제출·확인 권고

대 상 설 비		범 위	
1. 탄소무배출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아래에 해당하는 설비로 한정함(석탄 등 고체 화석연료 제외)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태양열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차광에 이용하는 설비	
	풍력 설비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수력 설비	물의 유동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해양에너지 설비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수열에너지 설비	물의 열을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전력저장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	
공정 설비	2.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또는 폐압)을 회수·이용하여 열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 폐열회수 보일러, 폐압 터빈발전, 열교환기, 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 증기 재압축장치, 응축수 회수 등	
		폐열이용 보일러	폐열을 이용하여 증기 및 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
		폐열회수형 용해로	배가스 폐열을 회수하는 용해 장치
		폐열회수 이용설비	폐열이나 냉열을 회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열풍, 온수, 증기, 동력 등을 생산하는 장치에 한함)
		폐열회수형 버너	축열식 열교환기가 내장된 축열식 버너 또는 간접 가열식 Radiation Tube 버너로서 Recuperator가 부착된 것
		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장치 (가연성 부생가스의 소각장치와 소각 발생열을 이용하는 장치가 동시에 설치된 것)

	폐열이송설비	공정폐열, 폐가스 등 폐열을 회수하여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거나 받기 위한 설비
	축열식 연소장치(R.T.O)	축열재를 통해 폐열을 회수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연소하는 장치
	폐열화수형 축매 연소장치	축매(백금, 팔라듐 등)를 이용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연소하고 연소폐열을 회수하여 이용하는 장치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공정폐열, 폐수열 등을 회수하여 이용하는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또는 ‘도시형 냉난방 융복합설비’로서 연료전지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열회수형 제상장치	냉동냉장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하여 제상시 이용하는 장치
	응축수 회수시설	응축수를 회수하여 보일러급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
	인쇄용 건조장치	코팅 또는 인쇄시 원재료에 도포된 도료를 열풍으로 건조시키는 장치(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하여 자체 열원으로 재사용할 것)
3. 폐기물 열분해설비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가스, 유류)하기 위한 설비	
4. 탄소포집설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포집하는 설비 ※ 조직경계 내의 포집·이송설비(이용설비는 제외)만 해당하며 이송설비는 반드시 포집설비와 함께 포함되어야 함	
5. 연료 전환	기존 온실가스 다배출 연료를 저탄소 연료 또는 전기로 변경하기 위한 연료전환 설비 -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연료전환은 포함, 공동주택(다만, 영구임대주택은 제외)에서 개별 난방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	
	노후 보일러 교체	설치후 7년이 경과한 보일러의 교체사업 (교체후 설비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에 한함, 기존 보일러 용량의 2배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대 이상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도 가능)
	전기 유도용해로	전기유도현상을 이용하여 금속물체를 용해하는 장치
	고주파 유도 가열장치	전기유도현상을 이용하여 금속물체를 가열하는 장치
	전기 침적식 보온로	가열장치가 용탕 안에서 직접 가열하는 보온로
	고온 도가니 전기로	내화물로 둘러싸인 도가니를 전기로 가열하는 장치
6. 물질 전환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低GWP 물질을 사용하는 설비(기기) ※ 제품군별 사용 제한 GWP를 만족하는 물질로 변경하는 경우	
7. 불소가스 저감 설비	전자산업 등에서 열, 플라즈마 등을 활용하여 FC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설비	

전력 · 연료 절감 설비	8. 기타 공정개선	2. ~ 7.에 해당하지 않으나 온실가스 배출공정의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설비 ※ 공정설비 개선으로 전기 사용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9. ~ 11.에 해당	
	9. 인버터	팬, 펌프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설비 (설치용량(kW)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상인 경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10. 인버터제어형 압축기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로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설치용량(kW)이 효율관리기자재 대상인 경우는 효율관리기자재 신고제품에 한함)	
	11. 고효율 설비	기존 설비의 개선을 통해 효율이 향상되거나 기존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신설 제외)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 교반기, 모터, 버너, 보일러, 터보압축기, 펌프 등 ※ 단순 보편화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LED 설비 등), 단순 노후제품 교체 및 단순 환경개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에너지절약형 유리용해로	용해실과 작업실을 분리하여 용해효율을 향상시킨 용해로 (Submarine 또는 Deep Throat 방식이며, 축열구조를 갖춘 것)
		롤 러 허 스 (RollerHearth) 킬른	대차(carriage)를 사용하지 않고 소성품을 롤러에 의해 운반하는 킬른
		모터전력부하 제어장치	부하전류를 분석하는 전력분석장치가 부착되어 인버터를 제어하여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는 장치(인버터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고온 응축수 펌프	100℃이상의 고온 응축수를 이송하는 펌프
		삼상유도전동기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 공단에 신고를 완료한 삼상유도전동기에 한함
		고효율 변압기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 공단에 신고를 완료한 표준소비효율 이상의 변압기에 한함
		회생제동장치	동력설비 동작시에 낭비되는 전력을 입력으로 받아서 전력을 다시 생산하는 설비(한국전력에서 고효율기기로 승인한 제품에 한함)
		인버터 제어형 진공펌프	인버터 제어에 의해 부하에 따라 전동기 회전수를 조절하는 진공펌프
		수차리 공정의 미세기포 발생설비	기포의 입경 크기를 미세화 할 수 있는 공정을 통해 일반 공기부상법에 비해 효율을 높여 동력비(에너지비용)를 절감하는 설비
		증기재압축식 증발 농축장치	증발농축기에서 증발된 증기를 압축하여 증발열원으로 재이용하는 장치
		증기 재이용 다중효용 농축관	증발관에서 발생한 수증기를 저압의 다음 증발관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장치(3중 효용관 이상인 것)

	적외선 건조기	적외선을 이용하여 건조하는 장치
	적외선 가열 건조 도장부스	적외선을 이용하여 가열건조하는 도장부스
	상변화식 에어드라이어	상변화물질을 이용하여 부하변동에 따라 자동 온/오프 제어로 압축기체의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또는 흡착식 드라이어를 상변화식 에어드라이어와 조합한 수분제거 시스템)
	에너지절약형 공기조화 시스템	공기를 정화, 냉각, 가열, 가습하여 실내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배기열 회수장치, 정풍량특성 댐퍼, 실내 온·습도 자동제어시스템을 구비한 것)
	제습 공조장치	내부에 제습기능을 내장한 공조장치(제습장치로 공기를 제습하고 폐열로 제습장치를 재생시키는 것)
	원적외선 난방시스템	원적외선을 이용하는 난방장치 (다만, 전기열원방식 및 바닥난방시설은 제외)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기존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을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라 공단에 신고를 완료한 1등급의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으로 개체하는 사업
	흡수식 냉방시설	연소가스, 증기, 고온수 등을 이용한 흡수식 냉동기 및 냉온수기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또는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는 설치 용량(kW)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술기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